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이윤진 이민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03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이윤진 이민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반편성은 같은 해에 출생한 아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지침을 제공해서 반별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상황, 학부모의 요구, 기관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4만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하나의 원칙으로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보육이 가능한 탄력보육을 허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집 반편성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탄력보육과 투담임제 반편성 현황을 다루었다. 보육품질 측면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원칙에서 벗어난 탄력보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며 한편, 동일 연령반 2개 반을 합반해서 2명의 교사가 보육하는 투담임제는 현장에서는 보편적인 반편성이지만 실태조사 연구는 거의 없어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었다.

현장은 늘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원칙을 융통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육품질을 유지하고 제고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보육정책이 추구하는 이상(理想)과 현실에서 접점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직무대행

차 례

요 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1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15
II. 연구배경	17
1.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과 예외사항	17
2. 어린이집 탄력보육 허용기준	19
3.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 운영 어린이집	26
4. 선행연구	29
III.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 운영 현황	31
1. 응답자 특성	31
2. 탄력보육 운영	32
3. 투담임제 운영 현황	46
4. 탄력보육과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	57
IV.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조사	65
1. 원장 면담조사 결과	65
2. 교사 면담조사 결과	71
3. 부모 면담조사 결과	77
V. 어린이집 반편성 합리화 방안	83
1. 탄력보육 합리화 방안	83
2. 투담임제 합리화 방안	87
참고문헌	90

부록	91
부록 1. 반편성 관련 원장 설문조사	93
부록 2. 반편성 관련 원장 면담조사	99
부록 3. 반편성 관련 교사 면담조사	101
부록 4. 반편성 관련 부모 면담조사	103
부록 5. 탄력보육 반 편성 현황 표탄력보육 반 편성 현황	105

표 차례

〈표 I-3-1〉 면담조사 참여 원장 일반적 특성	12
〈표 I-3-2〉 면담조사 참여 교사 일반적 특성	12
〈표 I-3-3〉 면담조사 참여 부모 일반적 특성	13
〈표 I-3-4〉 표본할당	14
〈표 I-3-5〉 설문조사 개요	14
〈표 I-3-6〉 설문내용	15
〈표 II-1-1〉 동년도 출생아 편성기준	17
〈표 II-1-2〉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18
〈표 II-1-3〉 혼합반 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19
〈표 II-2-1〉 2014년 이전 초과보육 허용 기준	19
〈표 II-2-2〉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20
〈표 II-2-3〉 초과보육 원칙적 금지	20
〈표 II-2-4〉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21
〈표 II-2-5〉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22
〈표 II-3-1〉 탄력보육 어린이집 현황: 지역별	26
〈표 II-3-2〉 탄력보육 어린이집 현황: 유형별	27
〈표 II-3-3〉 탄력보육 어린이집 현황: 연령별	28
〈표 II-3-4〉 투담임제 어린이집 현황	28
〈표 III-1-1〉 본 조사 참여 원장 특성	31
〈표 III-2-1〉 탄력보육제도 인지 여부	32
〈표 III-2-2〉 탄력보육 실시 여부	34
〈표 III-2-3〉 2016년 탄력보육 운영 연령 반	35
〈표 III-2-4〉 2016년 탄력보육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수	36
〈표 III-2-5〉 2017년 탄력보육 운영 연령 반	37
〈표 III-2-6〉 2017년 탄력보육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수	38
〈표 III-2-7〉 2016년 및 2017년 탄력보육 운영 반 연령별 초과 아동수	39
〈표 III-2-8〉 2016년 및 2017년 탄력보육 운영 반 보조교사 배치 여부	39
〈표 III-2-9〉 탄력보육 실시 주된 이유	41

〈표 III-2-10〉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의 처우개선	42
〈표 III-2-11〉 탄력보육 운영 반 처우개선 지급방법	43
〈표 III-2-12〉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 처우개선비: 정액제 지급	44
〈표 III-2-13〉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 처우개선비: 정률제 지급	45
〈표 III-3- 1〉 투담임제 인지 여부	47
〈표 III-3- 2〉 투담임제 실시 여부	48
〈표 III-3- 3〉 2016년 투담임제 운영 연령 반	49
〈표 III-3- 4〉 2016년 투담임제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수	50
〈표 III-3- 5〉 2017년 투담임제 운영 연령 반	51
〈표 III-3- 6〉 2017년 투담임제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수	52
〈표 III-3- 7〉 2016년 및 2017년 투담임제 연령별 반별 초과 아동수	54
〈표 III-3- 8〉 2016년 및 2017년 투담임제 반 보조교사 유무	55
〈표 III-3- 9〉 투담임제 실시 주된 이유	56
〈표 III-4 1〉 탄력보육의 장점	58
〈표 III-4 2〉 탄력보육의 단점	59
〈표 III-4 3〉 투담임제의 장점	60
〈표 III-4 4〉 투담임제의 단점	62
〈표 III-4 5〉 어린이집 반편성 개선방안	63
〈표 IV-1- 1〉 면담조사 참여 기관 특성	65
〈표 IV-1- 2〉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및 운영의 어려움: 원장	66
〈표 IV-1- 3〉 탄력보육 실시 이유: 원장	68
〈표 IV-1- 4〉 탄력보육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원장	68
〈표 IV-1- 5〉 탄력보육 허용 희망기준 및 개선점: 원장	69
〈표 IV-1- 6〉 투담임제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 원장	70
〈표 IV-1- 7〉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원장	71
〈표 IV-2- 1〉 면담조사 참여 교사의 일반적 특성	72
〈표 IV-2- 2〉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및 학급 운영의 어려움: 교사	72
〈표 IV-2- 3〉 탄력보육 실시 이유: 교사	74
〈표 IV-2- 4〉 탄력보육으로 인한 학급운영의 어려움: 교사	74
〈표 IV-2- 5〉 탄력보육 허용 희망기준: 교사	75
〈표 IV-2- 6〉 투담임제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 교사	76

〈표 IV-2-7〉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교사	76
〈표 IV-3-1〉 면담조사 참여 부모 특성	77
〈표 IV-3-2〉 면담조사 참여 부모의 자녀 특성	78
〈표 IV-3-3〉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부모	78
〈표 IV-3-4〉 탄력보육에 대한 의견: 부모	80
〈표 IV-3-5〉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 부모	81
〈표 IV-3-6〉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부모	81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어린이집 반편성은 연령별 편성이 원칙임. 그러나 예외적인 반편성 규정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력보육과 「보육사업안내」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일명,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에 주목하고자 함.
 - 2014년 이후 전면금지했던 초과보육을 탄력보육으로 용어를 바꿔서 재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뉨.
-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별 반편성 원칙 규정의 예외를 허용한 경우들 중에서,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지 않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탄력보육)”과 반편성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별최대정원제(투담임제)”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나. 연구내용

- 정부의 탄력보육 허용 기준을 분석하고, 반별최대정원제의 용어정의 및 실시 기준을 정리함.
- 시도별 탄력보육 허용 기준 요건, 탄력보육에 따른 교사의 추가수당 지급 및 보조교사 채용 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함.
-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탄력보육 및 반별최대정원제의 인지여부, 운영 시기, 운영하는 연령 반, 실시이유, 운영의 장단점, 탄력보육 담당 교사 처우개선,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파악함.
- 보육품질 서비스 측면에서 탄력보육 및 반별최대정원제 실시로 인한 교사와 아동의 이익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함.
- 탄력보육 및 반별최대정원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면담조사(원장 6명, 교사 5명, 학부모 7명), 설문조사, 정책연구실 무협의회, 현장전문가자문회의 실시함.
 - 설문조사는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 운영(추정) 어린이집 300개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함. 최종 316개 표집함.

라.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 본 연구는 어린이집 반편성 유형 중, 탄력보육과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로 한정함.
- 탄력보육 어린이집 범주에서 농어촌 특례규정 적용 어린이집은 제외함.
-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투담임제(쓰리담임제도 사용)”에 익숙함. 문헌연구, 면담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별최대정원제와 투담임제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했는데, 같은 개념의 용어임.

2. 연구배경

가.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과 예외사항

-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은 같은 해에 출생한(동년도 1월1일 ~ 12월 31일) 영유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임.
 - 연령별 반편성 교사대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1>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교사대 아동비율원칙	1:3	1:5	1:7	1:15	1:20
비고	-현원기준 -취학아동: : 1:20, 장애아: 1:3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사업 안내 자료집. p.60, p.185

- 상위연령반편성, 하위연령반편성, 혼합반 편성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나. 어린이집 탄력보육 허용 기준

□ 2014년 이전 초과보육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2>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탄력편성 가능인원	-	2명	2명	3명	3명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 p.67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 2016년 탄력보육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허용 기준

<표 3>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p.63.

○ 시도별 허용 기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함. 시도별 허용 기준의 차이가 조금씩 있음. 예를 들어, 서울과 대구는 전(全) 연령의 탄력 보육 허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함. 부산, 전북은 2세반까지 탄력보육 허용 인원은 1명으로 제한함. 나머지 지역은 정부지침과 동일함. 해당 반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방식도 정액제, 정률제 등 지역마다 책정이 다름.

다.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 운영 어린이집

□ 탄력보육 운영 어린이집은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10,107개소로 집계됨.

○ 탄력보육 반은 전국 총 20,918개로 집계되어, 전국 어린이집 1개당 약 2.07개 탄력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지역별로 보면, 탄력보육 허용기준을 가장 까다롭게 정한 서울의 경우 평균 2.1개보다 낮은 1.06개임.

○ 탄력보육반을 주로 운영하는 연령은 만 2세반이 42.0%로 가장 많고, 만 1세 31.0%, 만 3세 8.0% 순임.

-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인가된 보육실 개수보다 반수가 많은 어린이집)의 어린이집을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 총 19,735개로 집계됨.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약 48% 가량이 투담임제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음.

3. 탄력보육 및 반별최대정원제(투담임제) 운영 현황

가. 탄력보육 운영 현황

- 본 조사에 참여한 전국 316개 어린이집은 서울경기권이 가장 많았고(34.2%), 민간어린이집(42.7%)이 가장 많이 표집됨. 탄력보육과 투담임제 모두 시행하는 기관이 가장 많음(47.2%).
- 탄력보육에 대해 95.3%의 원장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2016년과 2017년 “모두 탄력보육을 실시했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음.
- 만 1세반과 만 2세반 등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함.
- 어린이집 한 개 당 탄력보육 반 개수는 평균 1.64개, 탄력보육 전체 아동 수는 평균 2.49명, 어린이집 1개당 1개반 탄력보육 평균 아동수는 1.52명임 (2017년 기준).
- 탄력보육 반에 “보조교사는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임.
- 탄력보육 실시 이유로는 운영의 어려움(27.9%)이 가장 많았고, 진급 시 1-2명 초과(26.4%), 학부모의 요청(17.3%) 순으로 나타남.
- 탄력보육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은 처우개선 수당 지급이 59.4%로 가장 많고, 인건비 인상 23.9%, 보조교사 채용 16.8%, 처우개선 미실시 5.6% 순으로 나타남.
 - 수당 지급방식은 정액제 47.9%, 정률제 52.1%로 정률제가 좀 더 많음.

나. 투담임제 운영 현황

- 투담임제에 대해 98.4%의 원장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2016년과 2017년 “모두 투담임제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음.
- 만 1세가 가장 많고(59.3%), 만 2세, 만 0세반 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2017년 기준). 탄력보육과 동일하게 영아반 중심으로 투담임제를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어린이집 한 개 당 투담임제 반 개수는 평균 1.58개, 투담임제 전체 아동 수는 평균 18.36명, 어린이집 1개당 1개반 투담임제 평균 아동수는 11.65명임(2017년 기준).
- 투담임제 반에 “보조교사는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임.
- 투담임제 실시 이유로는 보육실 수 부족(30.5%)이 가장 많았고, 한명교사의 보육의 어려움(21.4%), 보육 중 교사가 잠시 자리비움이 가능해서(21.4%)가 동률로 2위로 나타남.

다. 탄력보육과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

- 탄력보육의 장점으로 “기관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이 나옴. 다음으로 “진급 시 1~2명의 초과 수용 가능”(29.1%), “수요자의 요구 반영”(11.4%) 순임(1순위 응답기준).
- 탄력보육의 단점으로 “교사의 업무과중”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아이들의 안전 문제” “교사의 심리적 부담 과중” 순임(1순위 응답기준).
- 투담임제의 장점으로 “교사에게 휴식제공”이 약 40%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교사들끼리 상호 장점 공유”, “보육실의 효율적 운영” “아이들에게 폭넓은 교우관계 제공” 순임(1순위 응답기준).
- 투담임제의 단점으로 “교사 간 균형있는 업무 분장이 어려움”(31.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보육면적 협소화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문제” 25.0%, “특별한 단점 없음” 21.5%,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 미흡” 20.9% 순임(1순위 응답기준).

라.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반 편성 개선방안

- “현행 교사대아동비율은 준수하되 보조교사 배정”을 가장 많이 꼽음. 다음으

로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하향 조정”과 “정원 내에서 자율적 반편성 운영”이 동일하게 2순위로 나옴(1순위 응답결과 기준).

- 지역별, 설립유형별 개선방안의 의견차이가 유의미하게 큼. 예컨대, 국공립은 비율 하향 조정, 민간은 자율적 반편성 운영, 가정은 보조교사 배정을 1순위로 꼽음.

4. 탄력보육과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조사

- 원장, 교사, 학부모 입장에 따라 반편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름.
- 원장은 교사에 비해 탄력보육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 탄력보육 허용 기준도 총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함.
- 교사는 탄력보육으로 인한 1명의 아동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음. 추가 수당 지급은 전혀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고 함. 보조교사 배치를 원함.
- 투담임제는 원장과 교사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원장이 더 선호함. 교사는 업무분장, 역할분담,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 학부모는 탄력보육과 투담임제에 대해 아동의 안전, 건강상 등의 이유로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임. 현행 교사대아동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5. 어린이집 반편성 합리화 방안

가. 탄력보육 합리화 방안

- 허용기준의 탄력화를 제안함. 구체적으로 기관규모별 설립유형별(국공립·직장 vs 법인·민간·가정)로 탄력보육 허용기준을 달리할 것을 제안함.
 - 탄력보육이 주로 발생하는 영아반 반편성 기준 세분화(출생월별로 세분화)을 제안함.
- 탄력보육 수입금의 사용처 순서 변경

- 현행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보육사업안내)에서 “~~보육인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은 해당 반 보조교사 채용, 해당 반 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에 우선 사용함”으로 변경 제안

만 3세반 보조교사 배치 및 인건비 지원

- 본 연구에서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1: 15)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탄력보육 동의 요건의 현실화

- 원장은 학부모와 교사에게 탄력보육에 대한 공지 의무화
- 학부모와 교사의 찬반 동의서 구비 등

나. 투담임제 합리화 방안

「보육사업안내」에 하나의 반편성 유형으로 명시

해당용어 제정

- 예: 공동담임제, 1반2담임제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및 보수교육에서 다룸.

지도·감독 강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은 연령별 반편성이 원칙이다. 동일 연령의 영유아들이 한 반을 구성하고 담임교사 1명이 배치하도록 법적으로¹⁾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이나 부모(보호자)의 요구 등에 의해 반편성 기준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상위연령별 반편성(보호자 요청), 하위연령별 반편성(보호자 요청, 취학유예아동, 장애아), 혼합반 편성, 반별 정원 탄력편성 등이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경우들이다(보건복지부, 2017: 60-63). 이 중에서 하위연령별 반편성, 영유아 혼합반 반편성은 어린이집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시·군·구청 담당자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 61, 63).

본 연구에서는 반편성 기준 예외 형태 중에서 “반별 정원 탄력보육”과 “반별 최대정원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자는 정부가 2014년부터 운영 금지를 발표했다가 2016년에 허용했고, 후자는 허용하고 있다. “반별 최대 정원제”는 현장에선 투(쓰리)담임제, 복수담임제(이진희·김현주, 2017: 532), 합반(구수연, 2015) 등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투담임제 또는 복수담임제는 유치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과 다르다. 유치원의 투담임제는 한 반에 교사 2명²⁾을 배치한다는 의미이지만, 어린이집의 투담임제는 동일 연령의 독립된 2반 내지는 3반을 한 반으로 합반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도 도입한 “반별 정원 탄력편성(탄력보육)”은 종전의 초과보육보다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2014년 이전의 초과보육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0세반을 제외한 1~2세반은 반당 2인, 만 3세반 이상은 반당 3인을 초과 보육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보건복지부, 2008: 63)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면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2년 뒤인 2016년에 “반별 정원 탄력보육”이라 해서 초과보육을 재허용하였다. 대신, “반별 정원 탄력보육”은 이전의 초과보육과

1)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2) 사립유치원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임.

앞서 반편성 예외 사항보다 승인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였다. 탄력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하고, 초과보육은 만 1세반의 경우, 2명까지 허용했다면, 탄력보육은 1명만 허용하였다. 또, 탄력보육의 허용 기준을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게 정하도록 하면서 현재 탄력보육의 허용기준은 17개 시도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³⁾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만 2세반의 탄력보육 허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서 정부의 2명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탄력보육” 허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개 부모와 교사, 학계 전문가들은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입장이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부모의 요구를 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기관운영에도 도움이 되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탄력보육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만 2세반 교사는 1명의 교사가 최대 9명의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6. 3. 2)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두 자녀 이상이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와 아동의 편익관점에서 탄력 편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기면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단이 될 수 있다(연합뉴스, 2016. 3. 2)는 입장이다.

한편, 현장에서 투담임제 또는 복수담임제 사용하는 “반별최대정원제”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없고,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만 0세반 2:6, 만 1세반 2:10, 만 2세반 2:14”(보건복지부, 2014: 78)로 영아반의 운영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2017년의 「보육사업안내」에는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보건복지부, 2017: 59)하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반별최대정원제”를 연령별 반편성 예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편성 원칙에 견주어 보면, 특히 상황이므로 공식적인 관리감독절차(예를 들어, 시·군·구청 담당자 확인 또는 승인 등)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별 반편성 원칙 규정의 예외를 허용한 경우들 중에서,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지 않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탄력보육)”과 반편성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별최대정원제(투담임제)”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본문 참조

2. 연구내용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정한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및 2014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탄력보육 허용 기준 변천을 고찰하였다.

둘째, 시도별 탄력보육 허용 기준 요건, 탄력보육에 따른 교사의 추가수당 지급 및 보조교사 채용 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2017년 탄력보육과 투담임제(반별제대정원제) 운영 현황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 인지여부, 운영 시기, 운영하는 연령 반, 실시이유, 운영의 장단점, 탄력보육 담당 교사 처우개선,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넷째,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탄력보육과 투담임제의 운영 현황,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탄력보육과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의 운영방향 및 지침마련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관련 법령, 어린이집 운영 반 수 현황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나. 면담조사

1) 원장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원장은 총 6명이다. 국공립 4사례, 직장 1사례, 민간 1사례이다. 반별최대정원제인 투담임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었으며, 탄력보육은 3사례만 실시하고 있었다.

〈표 1-3-1〉 면담조사 참여 원장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기관소재지	총 경력(원장경력)	설립유형	탄력보육	투담임제
1	63	대학원졸	23년 7개월(16년 4개월)	국공립	o *올상반기까지만 운영	o
2	52	대학원졸	16년 7개월(2년 8개월)	국공립	o	o
3	57	대학원졸	33년 7개월(25년 7개월)	국공립	x	o
4	49	전문대졸	19년(4년 3개월)	국공립	x	o
5	54	대학원졸	32년 9개월(22년 9개월)	직장	x	o
6	60	대학원졸	12년 10개월(12년 10개월)	민간	o	o

주: 투담임제란 반별정원최대정원제의 현장 용어임.

2) 교사

본 면담조사에는 총 5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반별최대정원제의 현장 용어인 투담임제를 담당하는 교사가 4명이었으며, 탄력보육반은 담당하는 교사는 1명이다. 2014년부터 탄력보육을 금지하면서 탄력보육 담당 교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다. 투담임제반의 교사대아동비율 최대 정원을 밀돌았다. 사례 3은 만 3세반이라 누리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표 1-3-2〉 면담조사 참여 교사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학력	총 교사 경력 (현 기관경력)	설립 유형	현 담당 연령	교사대 아동 비율	비고
1	28	대졸	4년 5개월(4년 5개월)	직장	만 3세	2:18	투담임
2	27	대졸	3년 6개월(11개월)	국공립	만 2세	2:11	투담임
3	24	전문대졸	3년 6개월(1년 6개월)	민간	만 3세	2:24	투담임 *누리보조교사 추가배치
4	27	대졸	4년 6개월(6개월)	직장	만 2세	2:14	투담임
5	37	전문대졸	5년 6개월(4년 10개월)	민간	만 2세	1:8	보조교사

주: 투담임제란 반별정원최대정원제의 현장 용어임.

3) 부모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부모는 총 7명이다. 모두 어머니가 참여했으며 연령은 30대이다. 자녀는 1명이 3사례, 2명이 3사례, 3명이 1사례이며 사례 3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을 갖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600만원이다. 자녀 특성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부모들은 탄력보육이나 반별정원최대정원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집에 현재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를 선정해서 교사대아동비율, 반편성에 대한 인식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3-3〉 면담조사 참여 부모 일반적 특성

사례	자녀와의 관계	연령	총가구원수 (자녀수)	어린이집 기관유형	본인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1	모	38	3명(1명)	민간	보육교사	400만원
2	모	31	3명(1명)	국공립	보육교사	500만원
3	모	33	4명(2명)	국공립	주부	450만원
4	모	33	4명(2명)	민간	회사원	600만원
5	모	34	3명(1명)	민간	간호사	600만원
6	모	35	6명(3명)	가정	사업	500만원
7	모	34	5명(2명)	가정	회사원	500만원

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 3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최종 316명이 표집되었다. 모집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 받은 “인가된 보육실 개수보다 반수가 많은 어린이집 명단”(반별최대정원제 운영으로 추정)과 “반별 탄력편성 운영 중인 어린이집 명단”(탄력보육 운영으로 추정)을 활용하였으며 두 명단의 교집합인 어린이집을 최종 모집단들로 활용하였다. 또한 모집단들 크기 대비 목표 표본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설립유형을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리스트에서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특례를 적용받는 읍면 소재 어린이집을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모집단은 인가된 보육실 개수보다 반수가 많으면서 탄력편성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중 동 단위 소재 어린이집 12,642개소이다. 여기서 6개 권역, 11개 지역구분별 및 3개 설립유형별로 300개 표본을 할당하되, 최소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공된 비례배분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특정 권역 및 설립유형에 과소 표집 문제가 다소 해결 되었으며 모든 지역별로 최소 30표본 이상씩 안정적으로 할당하였다.

〈표 1-3-4〉 표본할당

단위: 명

지역		설립유형			종합
권역	소재지 규모	국공립	민간	가정	
서울경기권	대도시	8	26	32	66
	중소도시	4	39	52	95
대전충청권	대도시	0	6	5	11
	중소도시	0	10	9	19
광주전라권	대도시	1	5	5	11
	중소도시	1	9	7	17
대구경북권	대도시	1	8	2	11
	중소도시	0	8	4	12
부산울산경남권	대도시	2	15	8	25
	중소도시	1	10	9	20
강원제주권	중소도시	1	7	5	13
총합계		19	143	138	300

이렇게 추출한 전국 3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업체의 교육받은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1개 기관당 원장 1명이 응답했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였다.

〈표 1-3-5〉 설문조사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조사시점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조사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사방법	컴퓨터 기반 전화조사(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수	300개 어린이집의 원장 300명 (기관당 원장 1명)
표본추출 방법	제공된 비례배분법
조사기간	2017년 9월 25일 - 2017년 10월 11일

원장 대상 설문내용은 다음 〈표 1-3-6〉와 같다. 탄력보육과 반별최대정원제(투담입제) 모두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집단에서 표집은 했으나, 면

답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몇몇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면, 운영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본 조사에 완전하게 부합되는 모집단이라 보기 어려워서 인지 여부 문항을 설문지에 담았다.⁴⁾

〈표 1-3-6〉 설문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 연령, 최종학력, 원장경력
기관특성	- 근무기관 설립주체, 소재지역, 정원아, 현원아, 총 반수, 교사 수
탄력보육 및 반별최대정원 제(투담입제) 현황	- 탄력보육/투담입제 인지 및 실시 유무 - 실시현황(해당 연령반, 해당 반 총 아동수, 해당 반 보조교사 유무) - 실시이유, 탄력보육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방식 및 금액
어린이집 반편성 개선방안	- 탄력보육/투담입제의 장단점, 개선방안, 기타 의견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단기간 수행하는 본 과제는 부처와의 협의하면서 진행하였다. 연구시작 단계에서는 연구내용, 연구범위, 도출하고자 하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진행 단계에서는 부처로부터 관련 자료 협조 및 설문지 검토를 의뢰했다. 연구종료 단계에서는 조사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마.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실효성있는 어린이집 반편성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국공립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4) 설문조사 결과, 두 개 반을 모두 실시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표집되었고, 모두 비시행은 10%가 채 안됐다.

앞서 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어린이집 반편성은 “탄력보육”과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에 한정한다. 그리고 탄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별도의 특례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은 제외하였다. 2014년에 초과보육 금지 조치에서도 “단, 초과보육이 아닌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교사대아동비율 특례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은 지속 적용”(보건복지부, 2014: 83)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의 탄력보육과 비농어촌 지역의 탄력보육의 운영을 정부는 다르게 보고 있다. 이에 본 설문조사 표집에서 읍면 단위는 제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보육사업안내」의 “반별최대정원제”가 현장에서는 투담임제, 쓰리담임제로 사용되고 있다. 투담임제, 복수담임제가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면담조사와 설문조사에서는 현장에 익숙한 용어를 사용했다.

II. 연구배경

1.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과 예외사항

가.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이 같은 해에 출생한(동년도 1월1일 ~ 12월 31일)⁵⁾ 영유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7: 59).

〈표 II-1-1〉 동년도 출생아 편성기준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16. 1. 1일 이후 출생
만1세반	'15. 1. 1 ~ '15. 12. 31
만2세반	'14. 1. 1 ~ '14. 12. 31
만3세반	'13. 1. 1 ~ '13. 12. 31
만4세반	'12. 1. 1 ~ '12. 12. 31
만5세반	'11. 1. 1 ~ '11. 12. 31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사업 안내 자료집. p.59.

어린이집 운영 시 만 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며,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2'에 따르면 만0세는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으로 반별정원을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1:20, 장애아는 1:3이다(표 II-1-2 참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59).

5) 2008년까지는 1, 2월생은 전년도 3월1일~동년도 2월 28일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함.

〈표 II-1-2〉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교사대 아동비율 원칙	1:3	1:5	1:7	1:15	1:20
비고	- 현원기준 - 취학아동: 1:20, 장애아: 1:3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사업 안내 자료집. p.60, p.185.

정원책정 기준을 준수한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대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의 어린이집 정원책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 60).

나. 반편성 예외사항

연령별 반편성시 상위연령반편성, 하위연령반편성, 혼합반 편성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1) 상위연령반편성

아동이 1,2월생 자녀를 둔 보호자가 상위연령반의 편성을 원할 경우 상위연령 반편성신청서 제출 후 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출생아동이 속해있는 상위연령반의 편성을 허용한다(보건복지부, 2017: 60).

2) 하위연령반편성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아동을 하위연령반에 편성을 허용한다. 취학유예아동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하며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다. 단,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한다(보건복지부, 2017: 61).

3) 혼합반 편성

어린이집의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한다. 단, 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와 같이 지역내 수급상황,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혼합반 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표 II-1-3>과 같다(보건복지부, 2017: 63).

<표 II-1-3> 혼합반 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유아	만1세와 만2세 유아	만0세와 만2세 유아	만2세 이하 유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자료: 2017년 보육사업안내 p63 내용을 표로 재구성 하였음.

2. 어린이집 탄력보육 허용기준

가. 2014년 이전 초과보육 허용 기준

2014년 이전에 발행한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연령별 반편성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 단서를 달아놓았다.

<표 II-2-1> 2014년 이전 초과보육 허용 기준

단,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함.
 - 1~2세반은 반당 2인, 3세 이상은 반당 3인(단, 0세반은 제외)
 -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도하여야 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 p.67.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2〉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탄력편성 가능인원	-	2명	2명	3명	3명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 p.67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정부는 2014년도에 초과보육을 금지하였다. 다음 표는 2014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이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금지하고(2015년 전면 금지), 법인·민간·가정 등의 어린이집은 이듬해인 2016년 3월부터 전면금지하였다. 초과보육을 금지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표 II-2-3〉 초과보육 원칙적 금지

'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 2년간 보완 조치

2014년

- (국공립·직장)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 (법인·민간·가정 등) 시·군·구 신청·승인 후에 초과보육 가능

2015년

- (국공립·직장) '15년 3월부터 초과보육 전면 금지
- (법인·민간·가정 등)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6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16년 3월부터 전면 금지)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 p83.

나. 2016년 이후 탄력보육 허용 기준

1) 중앙정부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난 2016년에 어린이집 반별 정원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허용하였다.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

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다. 초과보육 때와 허용 기준이 거의 같으나, 만1세의 탄력보육 허용 인원을 초과보육에서는 2명까지 가능했으나, 탄력보육에서는 1명으로 낮췄다(표 II-2-3, 표 II-2-4 참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하며, 만0세아를 포함하여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탄력편성을 금지한다.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7: 63).

〈표 II-2-4〉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반별 정원 원칙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p.63.

2014년 이전까지 초과보육과 2016년 이후 탄력보육의 허용 인원 수는 만 1세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2014년 이전에는 만 1세도 2명까지 초과해서 받을 수 있으나, 2016년 탄력보육 허용에서는 1명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지침이며 세부 기준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나. 시·도청

2017년도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한 탄력보육 허용 기준은 다음 <표 II-2-5>와 같다. 서울과 대구는 전(全) 연령의 탄력보육 허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했다. 부산, 전북은 2세반까지 탄력보육 허용인원은 1명으로 제한했다. 그 외 지역은 정부지침을 채택하고 있다. 탄력보육을 가장 제한한 서울시와 대구의 허용 조건을 살펴보겠다. 먼저, 서울시는 재원아동이 상급반으로 승급할 때, 승급할 반의 교사대아동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즉, 탄력보육으로 신규아동을 뽑을 수는 없다. 이외에도 법적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2.64㎡)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반 교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탄력보육 담당 교사에게는 영아반은 10만원, 유아반은 7만원 이상의 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해야 하며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해당 반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2016년도에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재원아동의 승급할 경우에만 탄력보육을 허용했다가, 2017년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즉, 2017년에는 신규아동도 탄력보육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반 교사에게는 월 7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 2세도 1명으로 제한한 부산과 전북의 기준을 보자. 부산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해당 반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전체 동의까지도 필요하다. 해당 반 교사에게는 탄력편성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북은 추가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로 추가 지급이 허용 조건이다.

탄력보육 담당 보육교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조건은 정액제와 정률제 두 종류가 있다. 정액제로 지급하는 시도로는 서울, 대구이며 나머지는 초과보육료의 20%~40%를 지급하는 정률제이다. 해당 반 교사의 초과수당 지급 기준이 없는 지역은 세종, 경기, 경남이다.

〈표 II-2-5〉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허용범위			허용조건	
	1세반	2세반	3세반 이상	'16년	'17년
서울	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세반 및 만 2세반은 각 1개 반, 만 3세 이상 반은 2개 반까지 허용 -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하는 장애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된 경우에만 허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해당반 보육교사의 동의 필요 - 영아반 10만원, 유아반 7만원 이상의 별도 수당 지급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는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 	
부산	11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세반 및 만 2세 반은 각 2개 반까지 허용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및 해1당반 학부모 전체 및 보육교사 동의 필요 	

(표 II-2-5 계속)

지역	허용범위			허용조건	
	1세반	2세반	3세반 이상	'16년	'17년
부산	11	1	3	- 탄력편성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교사에게 탄력 편성 보육수당으로 지급	- 탄력편성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교사에게 탄력편성 보육수당으로 지급(합반으로 교사가 2 명이상일 경우 균등배분 가능)
대구	1	1	1	- 만1세반은 2개 반, 만2세반은 3개 반, 만3세반은 4개 반, 만4세이상 반은 2개 반까지 허용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 - 해당 반 교사수당 월 7만원 이상 지급	(삭제)
				-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된 경우, 형제 동반입소의 경우에만 허용 - '16. 7. 1부터 탄력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인천	1	2	3	- 반별 정원 모집 시 정원에 미달된 반이 있는 경우 및 중간 퇴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원 아동 수만큼 정원 외 초과수요가 있는 반에 초과 편성 가능	(삭제)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 - 추가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별도 수당으로 지급	

(표 II-2-5 계속)

지역	허용범위			허용조건	
	1세반	2세반	3세반 이상	'16년	'17년
광주	1	2	3	(신설)	- 추가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별도수당으로 지급
대전	1	2	3	-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	
				(신설)	- 어린이집 전용 면적 및 보육실 면적 등 준수
울산	1	2	3	(신설)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과반수 참석 과반수 동의, 학부모·교사1인 이상 반드시 참석) - 추가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별도수당으로 지급
세종	1	2	3	- 탄력 편성 반 보육실 면적 확보(원아당 2.6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 - 탄력 편성 반 보조교사, 평가인증보육도우미 등 보조 인력이 있을 경우 우선 인정하며, 보조 인력(보조교사, 평가인증보육도우미) 채용 계획 및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 급여 지급 계획 제출시도 인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해당반 보육교사 동의 필요 - 어린이집 보조인력(기타 종사자 가능) 채용 시 인정
경기	1	2	3		-
충북	1	2	3	- 추가수입금의 20%이상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로 사용 및 추가수입금의 30%이상은 교재·교구비 등 아동 보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신설)	- 탄력편성 승인조건의 이행 여부를 연간 2회 이상 지도·감독

(표 II-2-5 계속)

지역	허용범위			허용조건	
	1세반	2세반	3세반 이상	'16년	'17년
강원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해당 반 보육교사 동의 필요 - 추가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에 사용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는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 	(삭제)
충남	1	2	3	(신설)	- 추가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사용
전북	1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세반은 2개 반까지 허용 - 추가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로 추가 지급 	
전남	1	2	3	- 만1세반은 최대 3개 반까지 허용	- 만1세반 및 만2세반은 2개 반까지 허용
				(신설)	- 추가수입금의 20% 이상을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
경북	1	2	3	(신설)	- 만1세반은 최대 3개반까지 허용
경남	1	2	3	- 만1세반은 최대 3개반까지 허용	
제주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세반 및 만2세반은 2개반까지 허용 - 추가수입금의 30% 이상은 반드시 해당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 	

주: 탄력보육 반별 허용인원은 '16년과 동일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3).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3.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 운영 어린이집

가. 탄력보육 운영 어린이집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탄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는 10,107개소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7. 7). 전체 어린이집의 약 1/4 정도가 탄력보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탄력보육 반은 전국 총 20,918개로 집계되어, 전국 어린이집 1개당 약 2.07개 탄력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탄력보육 허용기준을 가장 까다롭게 정한 서울과 대구는 전국 평균 2.1개보다 낮은 각각 1.06개, 1.97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 한 곳당 탄력보육반은 2개반이 채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만 2세반의 허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한 부산과 전북의 경우도 각각 1.78개, 1.82개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어린이집 한 곳당 탄력보육반을 많이 운영하는 지역은 제주, 울산, 광주, 전남, 충북 등이다.

〈표 II-3-1〉 탄력보육 어린이집 현황: 지역별

단위: 개

구분	전체 어린이집수*	탄력보육 운영 어린이집 수	탄력보육 운영반	어린이집 1개당 평균 탄력보육 운영반
서울	6,368	216	231	1.06
부산	1,937	467	837	1.78
대구	1,483	425	842	1.97
인천	2,231	467	985	2.10
광주	1,238	475	1,175	2.47
대전	1,584	498	976	2.00
울산	895	473	1,232	2.60
세종	250	48	95	1.94
경기	12,120	3,539	6,894	1.95
강원	1,180	232	423	1.82
충북	1,208	429	1,041	2.42
충남	1,974	410	852	2.07
전북	1,562	427	777	1.82
전남	1,251	395	981	2.48
경북	2,102	573	1,288	2.24
경남	3,158	797	1,693	2.12
제주	543	236	633	2.67

(표 II-3-1 계속)

구분	전체 어린이집수*	탄력보육 운영 어린이집 수	탄력보육 운영반	어린이집 1개당 평균 탄력보육 운영반
총계	41,084	10,107	20,918	2.07

자료: 1)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7). 어린이집 반 편성 현황(시설별).
2)*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2016년 12월 말 기준)

탄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10,107개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어린이집이 58.4%로 가장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29.6%로 2순위를 차지했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탄력보육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2〉 탄력보육 어린이집 현황: 유형별

단위: 개(%)

지역	설립유형							총계
	가정	민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 체 등	직장	협동	
서울	57	95	52	-	5	6	1	216
경기	1,393	1,902	171	16	40	15	2	3,539
인천	67	384	10	1	4	1	-	467
강원	69	127	10	20	4	1	1	232
충북	8	259	21	48	9	4	-	429
충남	190	188	13	8	7	3	1	410
대전	159	278	10	31	6	10	4	498
세종	14	32	-	-	-	2	-	48
대구	51	318	17	33	6	-	-	425
울산	96	340	21	11	4	-	1	473
부산	77	316	32	22	14	4	2	467
경남	239	464	51	26	12	5	-	797
경북	119	372	29	40	4	9	-	573
광주	118	234	25	66	17	10	5	475
전남	98	215	30	41	8	3	-	395
전북	116	231	17	38	22	3	-	427
제주	40	144	9	31	7	5	-	236
총계	2,991(29.6)	5,899(58.4)	518(5.1)	432(4.3)	169(1.7)	81(.8)	17(.2)	10,107(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7). 어린이집 반 편성 현황(시설별).

동 자료에서 탄력보육반을 주로 운영하는 연령을 분석한 결과, 만 2세반이

42.0%로 가장 많았고, 만 1세 31.0%, 만 3세 8.0% 순으로 집계되었다. 대부분 영아반에서 탄력보육반 편성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연령별 탄력보육 운영 현황은 부록으로 실었다.

〈표 II-3-3〉 탄력보육 어린이집 현황: 연령별

단위: 개(%)

연령	0세	0-1세	1세	1-2세	2세	2-3세	3세	3-4세	총계 (비율)
소계 (비율)	-	-	6,624 (31.0)	2,040 (9.0)	8,997 (42.0)	137 (1.0)	1,714 (8.0)	437 (2.0)	
연령	4세	4-5세 이상	5세	누리 장애	장애아 종일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반		
소계 (비율)	520 (2.0)	579 (3.0)	508 (2.0)	71 (0.3)	37 (0.2)	12 (0.1)	-		21,67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7). 어린이집 반 편성 현황(시설별).

나. 투담임제 운영 어린이집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반을 운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인가된 보육실 개수보다 반수가 많은 어린이집)의 어린이집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투담임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총 19,735개로 집계되었다.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약 48% 가량이 투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투담임제는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반편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투담임제는 경기와 서울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으로는 가정, 민간, 국공립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4〉 투담임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지역	설립유형							총계 (비율)
	가정	민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단체 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협동	
서울	1,519	1,245	1,024	17	61	203	14	4,083(20.7)
경기	3,202	1,700	503	42	65	181	13	5,706(29.0)
인천	624	436	130	6	13	41	1	1,251(6.3)
강원	149	187	59	54	15	24	-	488(2.5)
충북	196	225	41	60	17	22	1	562(2.8)

(표 II-3-4 계속)

지역	설립유형							총계 (비율)
	가정	민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협동	
충남	198	246	36	43	16	33	1	573(2.9)
대전	234	125	15	11	6	44	1	436(2.2)
세종	79	60	11	2	1	12	-	165(.8)
대구	162	369	50	91	22	19	1	714(3.6)
울산	170	226	38	11	4	25	1	475(2.4)
부산	320	470	149	65	29	34	5	1,072(5.4)
경남	580	467	102	57	21	36	3	1,266(6.4)
경북	275	420	65	49	18	35	1	863(4.4)
광주	248	206	25	65	10	17	4	575(2.9)
전남	205	178	48	65	19	22	1	538(2.7)
전북	183	248	40	74	46	14	-	605(3.1)
제주	90	155	25	52	29	12	-	363(1.8)
계	8,434(42.7)	6,963(35.3)	2,361(12.0)	764(3.9)	392(2.0)	774(3.9)	47(2)	19,735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7). 어린이집 반 편성 현황(시설별).

4. 선행연구

어린이집의 탄력보육과 투담임제(복수담임제, 합반)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탄력보육에 대해 최근에 수행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 관련 선행연구보고서 2편과 논문 2편을 검토하였다.

이정림·이미화·구자연(2013)은 유아반 중심으로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에 대해 서울·경기지역 148개소 어린이집 원장, 만3-5세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2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3세반 교사대아동비율과 연령별 집단 크기에서 원장보다 교사가 생각하는 적정비율이 낮았다(이정림·이미화·구자연. 2013: 41-49). 1,2월생 아동의 동년도 출생아반 반편성에 대해 원장과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이정림·이미화·구자연.2013: 59). 이에 대해 유아반의 편성기준 모색과 교사 역할배치 등에 대해 보조교사 배치 지원, 팀티칭, 교사 순환근무, 대체교사 수급을 위한 지원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이정림·이미화·구자연. 2013: 63-66). 김은설 외(2016)는 교사대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방

안을 조사하기 위해 사례조사 및 총 260명의 전문가,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였다(김은설 외. 2016: 14-17). 조사 결과 교사대아동비율 조정, 교사 2명이 공동으로 영유아 담당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교사 추가배치, 3세반 인원기준 개선, 보조 교사 및 보조 인력의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교사 및 인적 자원 개선에 따른 예산을 추정을 통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김은설 외. 2016: 158-174).

논문 2편 모두 투담임제 운영 시 교사 들 간의 갈등 상황 및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수연(2015)은 영아반 합반 운영을 경험한 6명의 경력별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합반 운영을 경험한 교사들의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투담임제를 실시하면서 운영 간 차이와 교사들 간의 업무편중, 위계관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투담임제 운영 시 교사 간의 모델링과 멘토링을 통해 주도적 교실 운영 능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구수연, 2015: 403-407). 이진희와 김현주(2017)는 투담임제로 인한 교사들의 갈등 정도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영아반 복수담임 241명 대상으로 종전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해서 직무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결과, 갈등이 높은 집단은 교사 갈등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거나 소통을 회피하면서 교사 간의 갈등 수준이 높아짐을 도출하였다(이진희, 김현주. 2017: 537). 또한, 직무만족도도 갈등정도가 낮은(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이진희, 김현주. 2017: 536).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투담임제가 실제, 교사 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Ⅲ.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 운영 현황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 316개 어린이집의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전국 316개 어린이집에 참여한 기관의 원장 특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34.2%가 서울·경기권에 속하였다. 기관 유형에 따른 참여율은 민간어린이집(42.7%)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관의 반편성 규모는 5개 미만인 곳이 38.6% 이었고 탄력보육과 투담임제 모두 시행하는 곳(47.2%), 투담임제만 시행하는 곳(29.7%), 탄력보육만 시행하는 곳(15.2%)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본 조사 참여 원장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사례수	구분	비율	사례수
전체	100.0	(316)	전체	100.0	(316)
기관 소재지 권역			정원 규모		
서울경기권	34.2	(108)	20명 미만	23.1	(73)
대전충청권	13.3	(42)	20-29명	30.4	(96)
광주전라권	13.0	(41)	30-49명	21.2	(67)
대구경북권	12.7	(40)	50명 이상	25.3	(80)
부산울산경남권	17.4	(55)	현원규모		
강원제주권	9.5	(30)	20명 미만	32.0	(101)
지역규모			20-29명	24.7	(78)
대도시	42.1	(133)	30-49명	19.3	(61)
중소도시	57.9	(183)	50명 이상	24.1	(76)
설립유형			반편성 규모		
국공립	16.5	(52)	5개 미만	38.6	(122)
민간	42.7	(135)	5개	20.3	(64)
가정	40.8	(129)	6-10개	32.0	(101)
			11개 이상	9.2	(29)

(표 III-1-1 계속)

구분	비율	사례수	구분	비율	사례수
전체	100.0	(316)	전체	100.0	(316)
원장 경력			운영사항		
5년 미만	22.2	(70)	탄력보육만 시행	15.2	(48)
5-10년 미만	30.7	(97)	투담임제만 시행	29.7	(94)
10-15년 미만	22.8	(72)	모두 시행	47.2	(149)
15년 이상	24.4	(77)	모두 비시행	7.9	(25)

2. 탄력보육 운영

가. 인지 여부 및 운영 실태

1) 인지 여부

본 조사에 참여한 원장에게 탄력보육제도를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316기관 중 95.3%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은 탄력보육제도를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라권에서 100%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기관 유형이 민간(100%) 또는 현원규모가 30명 이상(100%), 반편성 규모가 11개 이상(100%)일 경우 '알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탄력보육만 운영하거나 탄력보육과 투담 임제를 병행 운영하는 경우 모두 탄력보육제도의 인지는 100.0%로 나타났다.

〈표 III-2-1〉 탄력보육제도 인지 여부

구분	몰랐다	알고 있었다	계(사례수)	단위: %(명)
전체	4.7	95.3	100.0(316)	$\chi^2(df)$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8.3	91.7	100.0(108)	7.271(5)
대전충청권	7.1	92.9	100.0(42)	
광주전라권	0.0	100.0	100.0(41)	
대구경북권	2.5	97.5	100.0(40)	
부산울산경남권	1.8	98.2	100.0(55)	
강원제주권	3.3	96.7	100.0(30)	

(표 III-2-1 계속)

구분	몰랐다	알고 있었다	계(사례수)	$\chi^2(df)$
전체	4.7	95.3	100.0(316)	
설립유형				
국공립	3.8	96.2	100.0(52)	14.928(2)**
민간	0.0	100.0	100.0(135)	
가정	10.1	89.9	100.0(129)	
현원규모				
20명 미만	6.9	93.1	100.0(101)	13.129(3)**
20-29명	10.3	89.7	100.0(78)	
30-49명	0.0	100.0	100.0(61)	
50명 이상	0.0	100.0	100.0(7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6.6	93.4	100.0(122)	8.514(3)*
5개	9.4	90.6	100.0(64)	
6-10개	1.0	99.0	100.0(101)	
11개 이상	0.0	100.0	100.0(2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0.0	100.0	100.0(48)	52.400(3)***
투담임제만 시행	7.4	92.6	100.0(94)	
모두 시행	0.0	100.0	100.0(149)	
모두 비시행	32.0	68.0	100.0(25)	

* $p < .05$, ** $p < .01$, *** $p < .001$

2) 운영실태

가) 실시여부

다음의 <표 III-2-2>는 2016년과 2017년에 탄력보육 실시했는지를 기관 소재지, 설립유형, 현원규모, 반편성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탄력보육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301사례)에 한해서 답한 결과이다. 두 해 모두 실시했다는 응답이 35.5%, 미실시했다는 응답은 34.6%로 비슷하게 나왔다. 서울·경기권은 2016년, 2017년 모두 미실시했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았다. 2017년과 전년도에 모두 실시한 지역은 강원·제주권 기관에서 55.2%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설립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두 해 모두 탄력보육을 실시했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현원규모 50명 이상(47.4%) 또는 11개 반 이상을 편성하고 있는 기관(51.7%)에서 두 해 모두 실시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표 III-2-2〉 탄력보육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2016년 실시	2017년 실시	2016-17 모두 실시	2016-17 모두 미 실시	계 (사례수)	χ^2 (df)
전체	5.6	24.3	35.5	34.6	100.0(301)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관	2.0	22.2	20.2	55.6	100.0(99)	49.58(15)***
대전충청권	10.3	12.8	46.2	30.8	100.0(39)	
광주전라권	2.4	19.5	51.2	26.8	100.0(41)	
대구경북권	7.7	35.9	35.9	20.5	100.0(39)	
부산울산경남권	7.4	37.0	33.3	22.2	100.0(54)	
강원제주권	10.3	13.8	55.2	20.7	100.0(29)	
설립유형						
국공립	2.0	30.0	20.0	48.0	100.0(50)	46.20(6)***
민간	6.7	24.4	52.6	16.3	100.0(135)	
가정	6.0	21.6	22.4	50.0	100.0(116)	
현원규모						
20명 미만	3.2	21.3	29.8	45.7	100.0(94)	28.17(9)**
20-29명	5.7	27.1	21.4	45.7	100.0(70)	
30-49명	4.9	31.1	45.9	18.0	100.0(61)	
50명 이상	9.2	19.7	47.4	23.7	100.0(7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6.1	28.9	26.3	38.6	100.0(114)	19.65(9)*
5개	1.7	22.4	29.3	46.6	100.0(58)	
6-10개	8.0	23.0	45.0	24.0	100.0(100)	
11개 이상	3.4	13.8	51.7	31.0	100.0(29)	

주: 탄력보육을 알고 있다고 응답자에 한해서 조사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2016년 실시현황

2016년 탄력보육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국 124기관 중 만1세반(66.1%)과 만2세반(58.1%) 순으로 탄력보육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1세반과 만2세반에서 각각 68.1%, 59.6%로 탄력보육과 투담임제 모두 시행하고 있었다. 기관 유형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1세반의 경우 72.7%의 가정어린이집에서 시행하였으며, 만2세는 국공립어린이집(72.7%)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2016년 탄력보육 운영 연령 반

단위: %(명)

구분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영아 혼합반	유아 혼합반	특수/ 장애아 (사례수) 반	
전체	2.4	66.1	58.1	9.7	10.5	4.8	2.4	0.8	0.0	(124)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4.5	59.1	59.1	9.1	18.2	0.0	0.0	0.0	0.0	(22)
대전충청권	0.0	59.1	63.6	13.6	18.2	13.6	4.5	4.5	0.0	(22)
광주전라권	0.0	68.2	59.1	13.6	13.6	0.0	0.0	0.0	0.0	(22)
대구경북권	0.0	52.9	64.7	11.8	11.8	5.9	5.9	0.0	0.0	(17)
부산울산경남권	0.0	81.8	50.0	4.5	0.0	4.5	4.5	0.0	0.0	(22)
강원제주권	10.5	73.7	52.6	5.3	0.0	5.3	0.0	0.0	0.0	(19)
설립유형										
국공립	0.0	54.5	72.7	36.4	9.1	0.0	9.1	0.0	0.0	(11)
민간	1.3	65.0	62.5	6.3	12.5	7.5	1.3	1.3	0.0	(80)
가정	6.1	72.7	42.4	9.1	6.1	0.0	3.0	0.0	0.0	(33)
현원규모										
20명 미만	6.5	61.3	51.6	19.4	12.9	6.5	0.0	0.0	0.0	(31)
20-29명	0.0	84.2	31.6	0.0	5.3	0.0	10.5	0.0	0.0	(19)
30-49명	0.0	71.0	64.5	3.2	3.2	3.2	0.0	0.0	0.0	(31)
50명 이상	2.3	58.1	69.8	11.6	16.3	7.0	2.3	2.3	0.0	(43)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2.7	67.6	45.9	8.1	10.8	0.0	2.7	0.0	0.0	(37)
5개	5.6	66.7	50.0	11.1	11.1	5.6	5.6	0.0	0.0	(18)
6-10개	1.9	66.0	66.0	3.8	9.4	7.5	1.9	1.9	0.0	(53)
11개 이상	0.0	62.5	68.8	31.3	12.5	6.3	0.0	0.0	0.0	(16)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0.0	60.0	53.3	3.3	16.7	6.7	3.3	0.0	0.0	(30)
모두 시행	3.2	68.1	59.6	11.7	8.5	4.3	2.1	1.1	0.0	(94)

2016년 탄력보육을 운영했던 기관 124곳 중 탄력보육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 수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1개 당 탄력보육 운영반 개수는 평균 1.56명 이고 어린이집 1개당 탄력보육 전체 아동 수는 평균 2.5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대전·충청권이 어린이집 1개 당 탄력보육 운영반 개수와 어린이집 1개 당 탄력보육 전체 아동 수가 각각 1.73개,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설립유형별 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탄력보육 운영반 개수 평균 2.00개, 탄력보육 전체 아동 수는 평균 3.0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원규모 및 반편 성 규모에 비례해서 탄력보육 운영반과 아동수가 많았다.

〈표 III-2-4〉 2016년 탄력보육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수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1개당 탄력보육 운영반 개수			어린이집 1개당 탄력보육 전체 아동 수			어린이집 1개당, 1개반 탄력보육 평균 아동 수			(사례수)
	평균 (개)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전체	1.56	0.64		2.52	1.55		1.61	0.86		(124)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1.64	0.79		2.50	1.30		1.53	0.81		(22)
대전충청권	1.73	0.63		2.86	1.39		1.66	0.88		(22)
광주전라권	1.50	0.60	0.53	2.64	1.97	0.64	1.76	1.06	0.94	(22)
대구경북권	1.53	0.80		2.65	2.09		1.73	1.00		(17)
부산울산경남권	1.45	0.51		2.36	1.50		1.63	0.79		(22)
강원제주권	1.53	0.51		2.05	0.91		1.34	0.48		(19)
설립유형										
국공립	2.00	1.00		3.09	1.76		1.55	0.67		(11)
민간	1.61	0.61	5.96**	2.66	1.57	3.26*	1.65	0.88	0.49	(80)
가정	1.30	0.47		1.97	1.31		1.51	0.88		(33)
현원규모										
20명 미만	1.52	0.72		2.39	1.86		1.57	0.97		(31)
20-29명	1.42	0.51	1.06	2.00	1.15	2.93*	1.41	0.69	2.12	(19)
30-49명	1.52	0.68		2.23	1.23		1.47	0.72		(31)
50명 이상	1.70	0.60		3.05	1.57		1.79	0.90		(43)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1.32	0.53		2.00	1.29		1.51	0.87		(37)
5개	1.61	0.61	2.96*	2.33	1.46	2.92*	1.45	0.83	0.98	(18)
6-10개	1.64	0.62		2.74	1.51		1.67	0.82		(53)
11개 이상	1.81	0.83		3.19	2.04		1.76	0.99		(16)
운영사항										
탄력보육만시행	1.40	0.67	2.65	2.37	1.87	0.36	1.69	1.14	0.49	(30)
모두 시행	1.62	0.62		2.56	1.45		1.59	0.77		(94)

* $p < .05$, ** $p < .01$

다) 2017년 실시현황

2017년 탄력보육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2-5>와 같다. 그 결과 전국 180기관 중 만 2세반(61.7%)과 만 1세반(60.6%) 순으로 탄력보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탄력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연령에 대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만 2017년 탄력보육을 실시한 기

관은 민간어린이집 68.3%가 만1세반의 탄력보육 실시하고 있으며 만2세는 국공립어린이집(64.0%)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2017년 탄력보육 운영 연령 반

구분	단위: %(명)								특수/ 장애아 반	(사태수)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영아 혼합반	유아 혼합반		
전체	1.7	60.6	61.7	12.8	8.9	7.2	4.4	0.6	0.0	(180)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4.8	61.9	71.4	11.9	11.9	7.1	0.0	0.0	0.0	(42)
대전충청권	0.0	60.9	52.2	17.4	17.4	4.3	0.0	4.3	0.0	(23)
광주전라권	0.0	72.4	65.5	10.3	3.4	6.9	0.0	0.0	0.0	(29)
대구경북권	0.0	57.1	50.0	10.7	7.1	7.1	10.7	0.0	0.0	(28)
부산울산경남권	0.0	47.4	60.5	15.8	7.9	7.9	10.5	0.0	0.0	(38)
강원제주권	5.0	70.0	65.0	10.0	5.0	10.0	5.0	0.0	0.0	(20)
설립유형										
국공립	4.0	40.0	64.0	28.0	16.0	24.0	4.0	0.0	0.0	(25)
민간	1.0	68.3	62.5	10.6	9.6	6.7	3.8	1.0	0.0	(104)
가정	2.0	54.9	58.8	9.8	3.9	0.0	5.9	0.0	0.0	(51)
현원규모										
20명 미만	2.1	47.9	56.3	16.7	12.5	14.6	6.3	0.0	0.0	(48)
20-29명	0.0	64.7	52.9	5.9	5.9	2.9	5.9	0.0	0.0	(34)
30-49명	2.1	72.3	70.2	6.4	4.3	2.1	2.1	0.0	0.0	(47)
50명 이상	2.0	58.8	64.7	19.6	11.8	7.8	3.9	2.0	0.0	(51)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1.6	50.8	58.7	12.7	7.9	3.2	7.9	0.0	0.0	(63)
5개	0.0	63.3	53.3	6.7	10.0	0.0	3.3	0.0	0.0	(30)
6-10개	2.9	67.6	66.2	10.3	4.4	8.8	2.9	1.5	0.0	(68)
11개 이상	0.0	63.2	68.4	31.6	26.3	26.3	0.0	0.0	0.0	(1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2.3	53.5	60.5	9.3	11.6	4.7	9.3	0.0	0.0	(43)
모두 시행	1.5	62.8	62.0	13.9	8.0	8.0	2.9	0.7	0.0	(137)

2017년 탄력보육을 운영했던 기관 180곳 중 탄력보육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 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한 개 당 탄력보육 운영반 개수는 평균 1.64개로 나타났으며 탄력보육 전체 아동 수는 평균 2.49명으로 나타났다. 탄력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1개당 1개반 탄력보육 평균 아동수는 1.52명이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탄력보육 운영반 개수는 1.92명, 탄력보육 전체 아동

수는 평균 3.00명으로 설립유형 기관 중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 III-2-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II-2-6> 2017년 탄력보육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수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1개당 탄력보육 운영반 개수			어린이집 1개당 탄력보육 전체 아동 수			어린이집 1개당 1개반 탄력보육 평균 아동 수			(사례수)
	평균 (개)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전체	1.64	0.79		2.49	1.97		1.52	0.87		(180)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1.71	0.67		2.38	1.53		1.39	0.74		(42)
대전충청권	1.78	1.00		2.87	2.07		1.61	0.80		(23)
광주전라권	1.59	0.63	0.67(5)	2.79	1.99	1.308(5)	1.76	1.02	2.27*	(29)
대구경북권	1.54	0.88		2.18	1.74		1.42	0.79		(28)
부산울산경남권	1.53	0.69		2.05	1.33		1.34	0.66		(38)
강원제주권	1.80	1.01		3.15	3.41		1.75	1.20		(20)
설립유형										
국공립	1.92	1.04		3.00	3.08		1.56	1.07		(25)
민간	1.74	0.79	7.26**	2.64	1.75	3.21*	1.52	0.79	0.14	(104)
가정	1.31	0.51		1.94	1.61		1.48	0.91		(51)
현원규모										
20명 미만	1.63	1.00		2.69	2.87		1.65	1.11		(48)
20-29명	1.35	0.65	2.23	1.85	1.10	2.61	1.37	0.68	4.65**	(34)
30-49명	1.77	0.70		2.26	1.47		1.28	0.61		(47)
50명 이상	1.75	0.69		2.96	1.66		1.70	0.86		(51)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1.41	0.66		2.11	1.63		1.49	0.87		(63)
5개	1.37	0.56	9.01***	1.73	1.31	8.58***	1.27	0.59	3.86*	(30)
6-10개	1.81	0.70		2.69	1.61		1.49	0.77		(68)
11개 이상	2.26	1.24		4.26	3.48		1.88	1.20		(1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1.53	0.77	1.09	2.28	1.64	0.67	1.48	0.92	0.11	(43)
모두 시행	1.68	0.79		2.56	2.06		1.53	0.85		(137)

* $p < .05$, ** $p < .01$, *** $p < .001$

라) 2016년 및 2017년 연령별 실시 현황

2017년도와 전년도 탄력보육을 실시한 연령의 반별 초과한 아동수를 비교한 결과 다음의 <표 III-2-7>와 같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운영반 개수(194개→296개)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III-2-7〉 2016년 및 2017년 탄력보육 운영 반 연령별 초과 아동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16			2017		
	운영반 개수(개)	1개 반당 탄력보육 아동 수(명)	표준 편차	운영반 개수(개)	1개 반당 탄력보육 아동 수(명)	표준 편차
전체	194	1.61		296	1.52	
연령대 반						
만 0세반	3	1.33	0.58	3	2.00	1.00
만 1세반	85	1.28	0.59	114	1.30	0.65
만 2세반	72	1.96	1.04	112	1.63	0.94
만 3세반	10	2.10	0.74	27	1.63	0.79
만 4세반	13	1.54	0.66	17	2.00	1.58
만 5세반	7	1.57	0.79	14	1.64	0.50
영아혼합반	3	1.33	0.58	8	1.13	0.35
유아혼합반	1	2.00	-	1	2.00	-
<i>t/F</i>		4.59***			2.70*	

* $p < .05$, *** $p < .001$

마) 2016년 및 2017년 탄력보육 반 보조교사 배치 여부

2016년, 2017년도 탄력보육 시 해당 반에 보조교사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6년 61.3%, 2017년도는 51.1%가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권(2016년 70.6%, 2017년 71.4%), 민간어린이집(2016년 67.5%, 2017년 56.7%)이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III-2-8〉 2016년 및 2017년 탄력보육 운영반 보조교사 배치 여부

단위: %(명)

구분	2016			2017		
	있음	없음	계(사태수)	있음	없음	계(사태수)
전체	38.7	61.3	100.0(124)	48.9	51.1	100.0(180)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54.5	45.5	100.0(22)	57.1	42.9	100.0(42)
대전충청권	40.9	59.1	100.0(22)	65.2	34.8	100.0(23)
광주전라권	27.3	72.7	100.0(22)	48.3	51.7	100.0(29)
대구경북권	29.4	70.6	100.0(17)	28.6	71.4	100.0(28)
부산울산경남권	45.5	54.5	100.0(22)	50.0	50.0	100.0(38)
강원제주권	31.6	68.4	100.0(19)	40.0	60.0	100.0(20)
$\chi^2(df)$		5.03(5)			8.88(5)	

(표 III-2-8 계속)

구분	2016			2017		
	있음	없음	계(사례수)	있음	없음	계(사례수)
설립유형						
국공립	45.5	54.5	100.0(11)	52.0	48.0	100.0(25)
민간	32.5	67.5	100.0(80)	43.3	56.7	100.0(104)
가정	51.5	48.5	100.0(33)	58.8	41.2	100.0(51)
$\chi^2(df)$		3.79(2)			3.426(2)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45.9	54.1	100.0(37)	54.0	46.0	100.0(63)
5개	33.3	66.7	100.0(18)	40.0	60.0	100.0(30)
6-10개	39.6	60.4	100.0(53)	48.5	51.5	100.0(68)
11개 이상	25.0	75.0	100.0(16)	47.4	52.6	100.0(19)
$\chi^2(df)$		2.32(3)			1.620(3)	
운영사항						
탄력보육만시행	46.7	53.3	100.0(30)	51.2	48.8	100.0(43)
모두 시행	36.2	63.8	100.0(94)	48.2	51.8	100.0(137)
$\chi^2(df)$		1.06(1)			0.12(1)	

나. 탄력보육 실시 이유 및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

1) 실시 이유

탄력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197곳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다음 <표 III-2-9>와 같다. 운영의 어려움(27.9%)이 가장 많았고, “진급시 1-2명 초과”⁶⁾(26.4%), “학부모의 요청”(17.3%)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제주권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서울경기권 및 광주전라권은 “진급시 1-2명 초과”가 1순위로 나왔다. 국공립은 “학부모의 요청”(30.8%)이나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30.8%) 탄력보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민간어린이집은 “기관운영의 어려움”으로 탄력보육을 실시하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은 “진급시 1-2명이

6) “진급 시 1-2명의 초과 수용 가능”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이다. 만 1세반을 세 반을 운영 하던 최대 재원아는 15명(교사대아동비율 1:5)이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의 만 2세반이 2개만 있다면, 한 반당 1:7이므로 14명까지만 진급할 수 있다. 즉, 15명 중 1명은 진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때, 탄력보육을 실시하면 15명 모두 진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재원아가 진급할 경우에만 탄력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기준이다.

초과"해서 탄력보육을 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탄력보육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설립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현원규모 20명 미만, 반편성 규모 5개(미만)에서 "연령별 단독반 구성이 어려워" 탄력보육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들 변인에서 "진급시 1-2명 초과"로 인해 탄력보육을 한다는 응답이 각각 27.5%, 35.7%로 높게 나왔다. 기관규모가 작으면 연령별 반편성 원칙을 준수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9〉 탄력보육 실시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학부모 요청	진급시 1-2명 초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관 운영 어려움	연령별 단독반 구성 어려움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	17.3	26.4	16.2	27.9	9.6	2.5	100.0(197)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20.5	29.5	25.0	20.5	2.3	2.3	100.0(44)	34.77(25)
대전충청권	11.1	22.2	14.8	29.6	18.5	3.7	100.0(27)	
광주전라권	16.7	43.3	6.7	16.7	16.7	0.0	100.0(30)	
대구경북권	19.4	35.5	12.9	25.8	6.5	0.0	100.0(31)	
부산울산경남권	23.8	14.3	14.3	31.0	11.9	4.8	100.0(42)	
강원제주권	4.3	13.0	21.7	52.2	4.3	4.3	100.0(23)	
지역규모								
대도시	28.6	24.3	7.1	28.6	8.6	2.9	100.0(70)	13.96(5)*
중소도시	11.0	27.6	21.3	27.6	10.2	2.4	100.0(127)	
설립유형								
국공립	30.8	23.1	30.8	11.5	0.0	3.8	100.0(26)	28.03(10)**
민간	15.9	22.1	16.8	36.3	8.0	0.9	100.0(113)	
가정	13.8	36.2	8.6	19.0	17.2	5.2	100.0(58)	
현원규모								
20명 미만	17.6	27.5	13.7	23.5	15.7	2.0	100.0(51)	25.59(15)*
20-29명	7.9	47.4	15.8	15.8	7.9	5.3	100.0(38)	
30-49명	22.0	16.0	24.0	28.0	10.0	0.0	100.0(50)	
50명 이상	19.0	20.7	12.1	39.7	5.2	3.4	100.0(58)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15.7	35.7	10.0	22.9	11.4	4.3	100.0(70)	22.63(15)
5개	16.1	25.8	22.6	22.6	12.9	0.0	100.0(31)	
6-10개	14.5	15.8	21.1	38.2	7.9	2.6	100.0(76)	
11개 이상	35.0	35.0	10.0	15.0	5.0	0.0	100.0(20)	

(표 III-2-9 계속)

구분	학부모 요청	진급시 1-2명 초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관 운영 어려움	연령별 단독반 구성 어려움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10.4	29.2	14.6	25.0	12.5	8.3	100.0(48)	11.14(5)*
모두 시행	19.5	25.5	16.8	28.9	8.7	0.7	100.0(149)	

주: 2016년과 2017년에만 실시한 경우와 두 해 모두 실시한 경우 모두 응답한 결과임.

* $p < .05$, ** $p < .01$

2)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 처우개선

탄력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 197곳 중 탄력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반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7곳 중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59.4%이고 인건비 인상 23.9%, 보조교사 채용 16.8%, 처우개선 미실시 5.6%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반 교사에게 주로 추가 비용 지원방식으로 처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경기권과 대전충청권은 보조교사 채용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탄력보육 허용 세부 기준이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공립과 민간은 처우개선 수당지급이 대부분인데 비해, 가정은 인건비 인상의 41.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I-2-10〉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의 처우개선

구분	인건비 인상	처우개선 수당지급	보조교사 채용	기타	처우개선 미실시	(사례수)
전체	23.9	59.4	16.8	1.0	5.6	(197)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15.9	54.5	34.1	2.3	0.0	(44)
대전충청권	37.0	44.4	29.6	0.0	7.4	(27)
광주전라권	36.7	60.0	16.7	0.0	0.0	(30)
대구경북권	19.4	58.1	6.5	0.0	19.4	(31)
부산울산경남권	28.6	57.1	7.1	0.0	7.1	(42)
강원제주권	4.3	91.3	0.0	4.3	0.0	(23)
설립유형						
국공립	11.5	73.1	11.5	3.8	7.7	(26)
민간	17.7	61.1	17.7	0.9	4.4	(113)
가정	41.4	50.0	17.2	0.0	6.9	(58)

단위: %(명)

(표 III-2-10 계속)

구분	인건비 인상	처우개선 수당지급	보조교사 채용	기타	처우개선 미실시	(사례수)
현원규모						
20명 미만	29.4	54.9	15.7	0.0	11.8	(51)
20-29명	28.9	55.3	23.7	0.0	2.6	(38)
30-49명	22.0	64.0	12.0	2.0	2.0	(50)
50명 이상	17.2	62.1	17.2	1.7	5.2	(58)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2.9	57.1	15.7	0.0	7.1	(70)
5개	19.4	51.6	29.0	0.0	3.2	(31)
6-10개	19.7	65.8	10.5	2.6	2.6	(76)
11개 이상	15.0	55.0	25.0	0.0	15.0	(20)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33.3	47.9	22.9	0.0	6.3	(48)
모두 시행	20.8	63.1	14.8	1.3	5.4	(149)

주: 2016년과 2017년에만 실시한 경우와 두 해 모두 실시한 경우 모두 응답한 결과임.

3)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방법

탄력보육을 실시하고 처우개선으로 수당지급을 하고 있다는 기관 117곳 중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 지급방법을 알아본 결과, 정률제로 지급하는 곳이 52.1%, 정액제 지급하는 곳이 47.9%로 나타났다. 정액제 지급하는 기관은 국립어린이집이 63.2%로 높았으며 정률제 지급하는 방식은 민간어린이집(60.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탄력보육만을 운영하는 경우 정액제 지급이 훨씬 높게 나왔다.

〈표 III-2-11〉 탄력보육 운영 반 처우개선 지급방법

구분	정액지급	정률지급	계(사례수)	$\chi^2(df)$
전체	47.9	52.1	100.0(117)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58.3	41.7	100.0(24)	25.33(5)***
대전충청권	75.0	25.0	100.0(12)	
광주전라권	22.2	77.8	100.0(18)	
대구경북권	77.8	22.2	100.0(18)	
부산울산경남권	50.0	50.0	100.0(24)	
강원제주권	14.3	85.7	100.0(21)	

단위: %(명)

(표 III-2-11 계속)

구분	정액지급	정률지급	계(사례수)	$\chi^2(df)$
설립유형				
국공립	63.2	36.8	100.0(19)	5.24(2)
민간	39.1	60.9	100.0(69)	
가정	58.6	41.4	100.0(29)	
현원규모				
20명 미만	53.6	46.4	100.0(28)	0.92(3)
20-29명	52.4	47.6	100.0(21)	
30-49명	43.8	56.3	100.0(32)	
50명 이상	44.4	55.6	100.0(3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55.0	45.0	100.0(40)	1.73(3)
5개	50.0	50.0	100.0(16)	
6-10개	44.0	56.0	100.0(50)	
11개 이상	36.4	63.6	100.0(11)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60.9	39.1	100.0(23)	1.94(1)
모두 시행	44.7	55.3	100.0(94)	

주: 처우개선으로 수당지급을 한다고 응답한 사례만 응답함.

*** $p < .001$

가) 정액제 지급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에게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처우개선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2-12>와 같다. 5만원~7만원 이하 지급하는 기관이 35.7%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 30.4%, 7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26.8%로 나타났다. 국공립은 5만원 이하가 41.7%로 가장 많았고, 민간과 가정은 5만원~7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표 III-2-12>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 처우개선비: 정액제 지급

구분	단위: %(명)				계(사례수)	$\chi^2(df)$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7만원 이하	7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전체	30.4	35.7	26.8	7.1	100.0(56)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35.7	35.7	21.4	7.1	100.0(14)	9.49(15)
대전충청권	11.1	33.3	44.4	11.1	100.0(9)	
광주전라권	25.0	50.0	25.0	0.0	100.0(4)	
대구경북권	21.4	28.6	35.7	14.3	100.0(14)	

(표 III-2-12 계속)

구분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7만원 이하	7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계 (사례수)	χ^2 (df)
부산울산경남권	50.0	41.7	8.3	0.0	100.0(12)	
강원제주권	33.3	33.3	33.3	0.0	100.0(3)	
설립유형						
국공립	41.7	33.3	25.0	0.0	100.0(12)	
민간	22.2	33.3	29.6	14.8	100.0(27)	5.89(6)
가정	35.3	41.2	23.5	0.0	100.0(17)	
현원규모						
20명 미만	33.3	46.7	13.3	6.7	100.0(15)	
20-29명	18.2	18.2	54.5	9.1	100.0(11)	
30-49명	28.6	42.9	21.4	7.1	100.0(14)	7.033(9)
50명 이상	37.5	31.3	25.0	6.3	100.0(1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1.8	40.9	22.7	4.5	100.0(22)	
5개	0.0	50.0	37.5	12.5	100.0(8)	
6-10개	40.9	27.3	27.3	4.5	100.0(22)	7.487(9)
11개 이상	25.0	25.0	25.0	25.0	100.0(4)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28.6	42.9	21.4	7.1	100.0(14)	
모두 시행	31.0	33.3	28.6	7.1	100.0(42)	0.486(3)

주: 치우개선으로 수당지급을 하는 사례 중 정액제라고 응답한 결과임.

나) 정률제 지급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에게 정률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치우개선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2-13>와 같다. 20%~30%이하 지급하는 기관이 31.1%로 가장 많았고 30%~40%이하(27.9%), 10%~20%이하(26.2%)순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지급도 국공립보다 민간과 가정의 지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3> 탄력보육 운영 반 교사 치우개선비: 정률제 지급

구분	단위: %(명)					계 (사례수)	χ^2 (df)
	10% 이하	10%~ 20%이하	20%~ 30%이하	30%~ 40%이하	40% 초과		
전체	13.1	26.2	31.1	27.9	1.6	100.0(61)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10.0	40.0	50.0	0.0	0.0	100.0(10)	
대전충청권	0.0	33.3	66.7	0.0	0.0	100.0(3)	52.15(20)***
광주전라권	7.1	50.0	42.9	0.0	0.0	100.0(14)	

(표 III-2-13 계속)

구분	10% 이하	10%~20%이하	20%~30%이하	30%~40%이하	40% 초과	계 (사례수)	χ^2 (df)
대구경북권	50.0	50.0	0.0	0.0	0.0	100.0(4)	
부산울산경남권	33.3	16.7	0.0	41.7	8.3	100.0(12)	
강원제주권	0.0	0.0	33.3	66.7	0.0	100.0(18)	
설립유형							
국공립	0.0	57.1	14.3	14.3	14.3	100.0(7)	
민간	16.7	19.0	33.3	31.0	0.0	100.0(42)	14.27(8)
가정	8.3	33.3	33.3	25.0	0.0	100.0(12)	
현원규모							
20명 미만	0.0	30.8	38.5	30.8	0.0	100.0(13)	
20-29명	20.0	40.0	20.0	20.0	0.0	100.0(10)	
30-49명	11.1	16.7	38.9	33.3	0.0	100.0(18)	8.08(12)
50명 이상	20.0	25.0	25.0	25.0	5.0	100.0(20)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5.6	38.9	27.8	22.2	5.6	100.0(18)	
5개	12.5	37.5	25.0	25.0	0.0	100.0(8)	
6-10개	17.9	10.7	35.7	35.7	0.0	100.0(28)	10.13(12)
11개 이상	14.3	42.9	28.6	14.3	0.0	100.0(7)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11.1	44.4	33.3	11.1	0.0	100.0(9)	
모두 시행	13.5	23.1	30.8	30.8	1.9	100.0(52)	2.62(4)

주: 치우개선으로 수당지급을 하는 사례 중 정률제라고 응답한 결과임.

*** $p < .001$

3. 투담임제 운영 현황

가. 인지여부 및 운영 실태

1) 인지여부

동일연령반 2~3개를 한반으로 합반해서 운영하는 투담임제(쓰리담임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98.4%) 원장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보육을 알고 있다는 95.3%보다 높은 수치이다. 서울경기권,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국공립, 현원 50명 이상, 반편성 6개 이상, 투담임제만 운영하거나 두 개 모두 운영하는 경우 100%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투담임제 인지 여부

구분	몰랐다	알고 있었다	계(사례수)	단위: %(명) $\chi^2(df)$
전체	1.6	98.4	100.0(316)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2.8	97.2	100.0(108)	6.395)
대전충청권	4.8	95.2	100.0(42)	
광주전라권	0.0	100.0	100.0(41)	
대구경북권	0.0	100.0	100.0(40)	
부산울산경남권	0.0	100.0	100.0(55)	
강원제주권	0.0	100.0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0.0	100.0	100.0(52)	3.36(2)
민간	0.7	99.3	100.0(135)	
가정	3.1	96.9	100.0(129)	
현원규모				
20명 미만	2.0	98.0	100.0(101)	1.81(3)
20-29명	2.6	97.4	100.0(78)	
30-49명	1.6	98.4	100.0(61)	
50명 이상	0.0	100.0	100.0(7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3	96.7	100.0(122)	4.35(3)
5개	1.6	98.4	100.0(64)	
6-10개	0.0	100.0	100.0(101)	
11개 이상	0.0	100.0	100.0(2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6.3	93.8	100.0(48)	17.25(3)**
투담임제만 시행	0.0	100.0	100.0(94)	
모두 시행	0.0	100.0	100.0(149)	
모두 비시행	8.0	92.0	100.0(25)	

** $p < .01$

2) 운영실태

가) 실시여부

2016년과 2017년에 투담임제를 실시했는지 알아본 결과, 두 해 모두 운영했다는 응답이 약 57%로 가장 많았다. 두 해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22%로 다음을 차지했고, 올해 실시했다 약 17%, 작년 실시했다 약 4% 순으로 나왔다. 정리하면, 실시했거나(2016년) 실시하고 있는(2017년+2016·2017년) 경우가 74.3%로 집계되어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투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권(63.6%), 광주전라권(63.4%) 지역이 두 해 연속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충청권(37.5%)이 실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국공립 및 현원 50인 이상, 6개 이상 특히, 11개 이상 반편성을 하는 대규모 어린이집에서 투담임제를 두 해 거쳐 실시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표 III-3-2〉 투담임제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2016년 실시	2017년 실시	2016-17년 모두 실시	2016-17년 모두 마삼시	계(사례수)	$\chi^2(df)$
전체	3.9	17.4	56.9	21.9	100.0(311)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2.9	17.1	57.1	22.9	100.0(105)	16.28(15)
대전충청권	7.5	20.0	37.5	35.0	100.0(40)	
광주전라권	0.0	14.6	63.4	22.0	100.0(41)	
대구경북권	2.5	20.0	62.5	15.0	100.0(40)	
부산울산경남권	3.6	18.2	63.6	14.5	100.0(55)	
강원제주권	10.0	13.3	53.3	23.3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0.0	17.3	71.2	11.5	100.0(52)	16.91(6)**
민간	4.5	14.9	62.7	17.9	100.0(134)	
가정	4.8	20.0	44.8	30.4	100.0(125)	
현원규모						
20명 미만	6.1	16.2	51.5	26.3	100.0(99)	11.19(9)
20-29명	3.9	22.4	48.7	25.0	100.0(76)	
30-49명	1.7	18.3	60.0	20.0	100.0(60)	
50명 이상	2.6	13.2	69.7	14.5	100.0(7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6.8	21.2	39.8	32.2	100.0(118)	45.21(9)***
5개	4.8	19.0	46.0	30.2	100.0(63)	
6-10개	1.0	13.9	75.2	9.9	100.0(101)	
11개 이상	0.0	10.3	86.2	3.4	100.0(29)	

** $p < .01$, *** $p < .001$

나) 2016년 실시현황

2016년에 투담임제를 운영한 어린이집 189개 대상으로 투담임제를 운영한 연령반을 알아보았다. 결과, 만1세반이 63.5%로 가장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2세반(47.1%), 만 0세반(24.9%) 순이다. 영아반에서 투담임제를 대부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만 3세, 4세, 5세 단독 유아반을 합친 투담임제 운영 비율은 20.1%로 집계되었다. 혼합반의 투담임제도 유아반 보다는 영아

반에서 약 5배가량 더 많이 운영하였다.

대전충청권은 만 1세반, 만 2세반의 투담임제 운영 비율이 동일하게 나왔다. 대구경북권은 만 2세반이 가장 많이 투담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권은 만 0세반 투담임제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국공립은 만 2세반 운영 비율이 91.9%로 가장 많았고, 민간과 가정은 만 1세반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어린이집 경우 만 0세반이 4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투담임제만 운영하는 경우, 만 0세반의 운영 비율이, 모두 시행하는 경우(투담임제+탄력보육), 만 2세반의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3-3〉 2016년 투담임제 운영 연령 반

단위: %(명)

구분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영아 혼합반	유아 혼합반	특수/장애아 반 (사례수)
전체	24.9	63.5	47.1	10.6	5.3	4.2	5.8	1.6	1.1 (189)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38.1	61.9	42.9	15.9	4.8	4.8	3.2	1.6	0.0 (63)
대전충청권	16.7	55.6	55.6	0.0	5.6	5.6	5.6	0.0	5.6 (18)
광주전라권	26.9	76.9	53.8	7.7	0.0	0.0	3.8	3.8	0.0 (26)
대구경북권	15.4	46.2	53.8	3.8	7.7	3.8	11.5	3.8	0.0 (26)
부산울산경남권	10.8	70.3	43.2	13.5	8.1	8.1	8.1	0.0	2.7 (37)
강원제주권	26.3	68.4	42.1	10.5	5.3	0.0	5.3	0.0	0.0 (19)
설립유형									
국공립	27.0	70.3	91.9	27.0	16.2	16.2	2.7	2.7	5.4 (37)
민간	13.3	70.0	57.8	6.7	4.4	1.1	6.7	1.1	0.0 (90)
가정	40.3	50.0	4.8	6.5	0.0	1.6	6.5	1.6	0.0 (62)
현원규모									
20명 미만	29.8	47.4	26.3	17.5	5.3	7.0	7.0	1.8	0.0 (57)
20-29명	40.0	62.5	20.0	2.5	0.0	0.0	7.5	0.0	0.0 (40)
30-49명	16.2	73.0	67.6	8.1	2.7	2.7	2.7	2.7	2.7 (37)
50명 이상	14.5	74.5	74.5	10.9	10.9	5.5	5.5	1.8	1.8 (55)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0.9	56.4	10.9	7.3	0.0	1.8	10.9	1.8	0.0 (55)
5개	46.9	50.0	25.0	3.1	3.1	0.0	3.1	0.0	0.0 (32)
6-10개	13.0	71.4	77.9	10.4	6.5	6.5	2.6	1.3	1.3 (77)
11개 이상	20.0	72.0	60.0	28.0	16.0	8.0	8.0	4.0	4.0 (25)
운영사항									
투담임제만시행	34.6	64.1	37.2	12.8	6.4	6.4	7.7	3.8	2.6 (78)
모두 시행	18.0	63.1	54.1	9.0	4.5	2.7	4.5	0.0	0.0 (111)

2016년에 투담임제를 운영한 어린이집의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운영반 평균 개수는 약 1.7개이고, 투담임제 운영 1개 반의 아동수는 평균 12.2명이다. 투담임제반의 전체 아동수 평균은 20.2명으로 집계되었다. 앞서 주로 만 1세, 만 2세 영아반에서 투담임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 지어 분석하면, 투담임제 합반(두 개 합반 기준)의 아동수는 만 1세반은 10명, 만 2세반은 14명이다. 따라서 투담임제 1개반별 평균 아동수는 12.21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전라권이 투담임제 운영반 수가 1.77개로 가장 많고, 대전충청권 및 대구경북권이 1.50개로 가장 적었다. 국공립이 민간, 가정보다 운영 반수와 1개반별 투담임제 평균 아동수가 많았다. 현원규모 50명 이상, 반편성 11개 이상 등 대규모 어린이집의 투담임제 운영반 수, 평균 아동수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2016년 투담임제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수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운영반 개수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전체 아동 수			어린이집 1개당, 1개반별 투담임제 평균 아동 수			(사례수)
	평균 (개)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전체	1.66	0.96		20.22	18.69		12.21	6.27		(189)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1.71	1.14		19.67	19.62		11.47	5.20		(63)
대전충청권	1.50	0.71		18.39	9.94		12.26	3.99		(18)
광주전라권	1.77	0.71	0.35	22.92	15.25	0.18	12.96	7.90	0.52	(26)
대구경북권	1.50	0.58		18.96	16.83		12.64	6.85		(26)
부산울산경남권	1.68	1.16		20.73	22.99		12.37	6.70		(37)
강원제주권	1.63	0.90		20.84	20.94		12.77	7.09		(19)
설립유형										
국공립	2.65	1.40		39.03	29.90		14.73	7.86		(37)
민간	1.63	0.68	43.77***	20.50	11.31	45.15***	12.55	5.24	29.17***	(90)
가정	1.10	0.35		8.60	3.27		7.84	2.16		(62)
현원규모										
20명 미만	1.49	1.00		20.12	26.07		13.49	9.81		(57)
20-29명	1.30	0.52	5.98**	11.58	6.40	5.82**	8.90	2.91	7.83***	(40)
30-49명	1.70	1.00		19.41	12.38		11.40	3.77		(37)
50명 이상	2.05	1.03		27.16	16.59		13.22	4.22		(55)

(표 III-3-4 계속)

구분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운영반 개수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전체 아동 수			어린이집 1개당, 1개반별 투담임제 평균 아동 수			(사례)
	평균 (개)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1.18	0.43		10.44	5.53		8.83	2.68		(55)
5개	1.25	0.51	17.11***	10.34	5.43	21.42***	8.28	2.64	20.77***	(32)
6-10개	1.91	0.98		26.49	20.13		13.88	5.67		(77)
11개 이상	2.44	1.39		35.08	25.33		14.38	8.93		(25)
운영사항										
투담임제만 시행	1.74	1.21	1.095	20.42	22.96	0.02	11.71	7.09	1.52	(78)
모두 시행	1.59	0.74		20.08	15.10		12.59	5.54		(111)

** p < .01, *** p < .001

다) 2017년 실시현황

올해 투담임제 운영 연령 반 역시, 2016년과 동일하게 만 1세가 가장 많고 (59.3%), 만 2세, 만 0세 반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반 중심으로 투담임제를 운영하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은 만 2세반이 84.8%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은 만 0세반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규모가 작을수록 만 0세, 만 1세반의 투담임제 운영비율이 높았고, 클수록 만 1세, 만 2세의 운영비율이 높았다.

<표 III-3-5> 2017년 투담임제 운영 연령 반

구분	단위: %(명)									(사례)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영아 혼합반	유아 혼합반	특수/장애아 반	
전체	24.2	59.3	42.4	9.5	4.3	3.9	8.7	1.3	1.7	(231)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33.3	60.3	39.7	14.1	3.8	3.8	3.8	2.6	1.3	(78)
대전충청권	21.7	52.2	39.1	8.7	0.0	4.3	8.7	0.0	8.7	(23)
광주전라권	37.5	65.6	40.6	6.3	0.0	0.0	3.1	3.1	0.0	(32)
대구경북권	15.2	45.5	57.6	3.0	6.1	3.0	18.2	0.0	0.0	(33)
부산울산경남권	8.9	64.4	40.0	8.9	8.9	8.9	13.3	0.0	2.2	(45)
강원제주권	20.0	65.0	40.0	10.0	5.0	0.0	10.0	0.0	0.0	(20)
설립유형										
국공립	21.7	65.2	84.8	23.9	15.2	15.2	2.2	0.0	8.7	(46)

(표 III-3-5 계속)

구분	만	만	만	만	만	만	영아	유아	특수/	(사례수)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반	혼합반	장애아 반	
민간	14.4	68.3	51.0	5.8	1.9	1.0	7.7	2.9	0.0	(104)
가정	38.3	44.4	7.4	6.2	1.2	1.2	13.6	0.0	0.0	(81)
현원규모										
20명 미만	34.3	37.3	25.4	13.4	4.5	6.0	13.4	1.5	0.0	(67)
20-29명	29.6	59.3	14.8	3.7	1.9	0.0	11.1	1.9	0.0	(54)
30-49명	17.0	61.7	63.8	6.4	2.1	2.1	4.3	0.0	4.3	(47)
50명 이상	14.3	81.0	68.3	12.7	7.9	6.3	4.8	1.6	3.2	(63)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0.6	43.1	13.9	6.9	2.8	2.8	16.7	2.8	0.0	(72)
5개	36.6	53.7	24.4	2.4	0.0	0.0	7.3	0.0	0.0	(41)
6-10개	15.6	71.1	68.9	11.1	4.4	5.6	3.3	0.0	3.3	(90)
11개 이상	17.9	71.4	57.1	21.4	14.3	7.1	7.1	3.6	3.6	(28)
운영사항										
투담임제만 시행	30.0	54.4	31.1	14.4	6.7	5.6	12.2	3.3	3.3	(90)
모두 시행	20.6	62.4	49.6	6.4	2.8	2.8	6.4	0.0	0.7	(141)

올해 투담임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231개의 1개당 투담임제 운영반 수는 평균 1.58개로 2016년도에 비해 적었다. 어린이집 1개당 1개반 투담임제 평균 아동수는 11.65명으로 이 역시, 2016년도 보다 수치가 떨어졌다. 서울경기권이 투담임제 운영반수가 1.64개로 가장 많고, 대전충청권이 1.43개로 가장 적었다. 국공립, 현원규모 50인 이상, 반편성 11개 이상, 투담임제만 시행하는 경우 투담임제 운영반수, 투담임제 전체 아동수, 1개반 투담임제 평균 아동수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2017년 투담임제 운영 반 개수 및 초과 아동수

구분	단위: 개소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운영반 개수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전체 아동 수			어린이집 1개당, 1개반 투담임제 평균 아동 수			(사례수)
	평균 (개)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전체	1.58	0.91		18.36	17.25		11.65	5.92		(231)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1.64	1.06		18.18	17.78		11.08	4.88		(78)
대전충청권	1.43	0.66		15.96	11.53		11.12	5.03		(23)

(표 III-3-6 계속)

구분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운영반 개수			어린이집 1개당 투담임제 전체 아동 수			어린이집 1개당, 1개반 투담임제 평균 아동 수 (사례수)		
	평균 (개)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평균 (명)	표준 편차	t/F
광주전라권	1.56	0.67		18.84	12.93		12.06	6.69	(32)
대구경북권	1.52	0.57	0.23(5)	18.36	15.31	0.13(5)	12.12	6.31	(33)
부산울산경남권	1.60	1.16		19.29	21.83		12.06	6.73	0.53
강원제주권	1.55	0.76		19.00	19.58		12.26	6.89	(20)
설립유형									
국공립	2.41	1.39		34.22	28.33		14.18	7.64	(46)
민간	1.56	0.67	39.34***	19.11	10.75	45.93***	12.27	4.65	40.97 (104)
가정	1.12	0.33		8.41	3.05		7.48	2.25	(81)
현원규모									
20명 미만	1.42	0.92		17.40	24.27		12.27	9.23	(67)
20-29명	1.22	0.42	9.23***	10.35	4.78	8.93***	8.47	2.73	9.20*** (54)
30-49명	1.62	0.99		18.68	10.96		11.55	3.79	9.20***
50명 이상	2.02	0.98		26.02	15.85		12.91	4.21	(63)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1.19	0.43		10.06	5.57		8.42	2.84	(72)
5개	1.24	0.43	15.09***	10.83	5.43	20.77***	8.71	3.05	24.46*** (41)
6-10개	1.84	0.94		24.94	19.33		13.52	5.65	24.46***
11개 이상	2.18	1.49		29.61	25.12		13.59	8.30	(28)
운영사항									
투담임제만 시행	1.62	1.16	0.38	18.27	21.58	0.01	11.26	7.00	1.08 (90)
모두 시행	1.55	0.71		18.43	13.88		11.92	5.07	1.08

** p < .01, *** p < .001

라) 2016년 및 2017년 투담임제 연령별 실시 현황

작년과 올해의 투담임제를 실시하는 연령별 반은 각각 313개, 364개로 올해가 약간 증가했다. 1개 반당 투담임제 아동수는 12.21명에서 11.65명으로 감소했다. 투담임제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만 1세반의 운영반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영아반의 경우, 투담임제 1개 반당 투담임제의 평균 아동수가 각 연령의 교사대아동비율에 따른 합반보다 많이 나온 점이 특이하다. 예컨대, 가장 많이 투담임제를 실시하는 만 1세반의 교사대아동비율은 1:5이므로 두 반을 합치면 아동수가 10명인데, 평균 10.51명(2016년), 10.14명(2017년)으로 집계되었다. 투담임제이면서 탄력보육을 실시한 경우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만 3세 이상의 유아반의 투담임제 1개반의 평균 아동수는 교사대아

동비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의 경우 1:15이므로 두 반을 합하면 아동수가 30명이어야 하는데, 16.86명(2016년), 16.29명(2017년)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는 어린이집 유아반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표 III-3-7〉 2016년 및 2017년 투담임제 연령별 반별 초과 아동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16			2017		
	운영반 개수(개)	1개 반당 투담임제 아동수(명)	표준 편차	운영반 개수(개)	1개 반당 투담임제 아동수(명)	표준 편차
전체	313	12.21		364	11.65	
연령대 반						
만 0세반	46	6.59	1.97	56	6.48	2.11
만 1세반	121	10.51	2.10	138	10.14	2.69
만 2세반	86	14.98	5.44	96	14.50	4.31
만 3세반	22	16.86	7.60	24	16.29	8.01
만 4세반	10	21.50	11.96	10	20.50	12.92
만 5세반	8	23.50	12.66	9	22.67	12.60
영아혼합반	15	8.80	3.19	23	9.52	5.12
유아혼합반	3	15.33	6.66	3	10.67	1.27
<i>t/F</i>		27.77***			30.58***	

*** $p < .001$

마) 2016년 및 2017년 투담임제 반 보조교사 배치

작년과 올해 투담임제를 운영한 어린이집의 해당 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가(없음) 있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작년보다는 올해 보조교사를 배치한 경우가 더 많았다. 탄력보육반의 보조교사 배치 여부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서울경기권이 투담임제반에 보조교사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권이 가장 적었다. 가정어린이집의 투담임제반에 보조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국공립, 민간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보조교사를 배치한 경우가 많아졌다. 반편성 5개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의 투담임제반에 보조교사 배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2016년 및 2017년 투담임제 반 보조교사 유무

단위: %(명)

구분	2016			2017		
	있음	없음	계(사례수)	있음	없음	계(사례수)
전체	36.5	63.5	100.0(189)	47.6	52.4	100.0(231)
기관 소재지권역						
서울경기권	46.0	54.0	100.0(63)	53.8	46.2	100.0(78)
대전충청권	27.8	72.2	100.0(18)	43.5	56.5	100.0(23)
광주전라권	38.5	61.5	100.0(26)	50.0	50.0	100.0(32)
대구경북권	19.2	80.8	100.0(26)	33.3	66.7	100.0(33)
부산울산경남권	40.5	59.5	100.0(37)	51.1	48.9	100.0(45)
강원제주권	26.3	73.7	100.0(19)	40.0	60.0	100.0(20)
$\chi^2(df)$		7.56(5)			4.83(5)	
설립유형						
국공립	35.1	64.9	100.0(37)	39.1	60.9	100.0(46)
민간	30.0	70.0	100.0(90)	39.4	60.6	100.0(104)
가정	46.8	53.2	100.0(62)	63.0	37.0	100.0(81)
$\chi^2(df)$		4.49(2)			11.78(2)**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45.5	54.5	100.0(55)	58.3	41.7	100.0(72)
5개	40.6	59.4	100.0(32)	46.3	53.7	100.0(41)
6-10개	33.8	66.2	100.0(77)	41.1	58.9	100.0(90)
11개 이상	20.0	80.0	100.0(25)	42.9	57.1	100.0(28)
$\chi^2(df)$		5.32(3)			5.12(3)	
운영사항						
투담임제시행	39.7	60.3	100.0(78)	55.6	44.4	100.0(90)
모두 시행	34.2	65.8	100.0(111)	42.6	57.4	100.0(141)
$\chi^2(df)$		0.60(1)			3.72(1)	

** $p < .01$

나. 투담임제 실시 이유

투담임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로는 “보육실수 부족”이 30.5%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1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를 보육하기 어려워서”(21.4%), “보육 중 교사가 잠시 자리비움이 가능해서”(21.4%), “보육실 면적이 넓어서”(20.6%) 등이 엇비슷하게 나왔다(1순위 기준). 중복응답에서는 “보육 중 교사가 잠시 자리비움이 가능해서”(46.5%)가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보육실수 부족”(39.9%), “보육실 면적이 넓어서”(36.6%), “1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를 보육하기 어려워서”(32.1%) 순이다.

보육실수가 부족해서 투담임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투담임제를 실시하려면 법적 보육실 면적인 2.64㎡(보건복지부, 2017: 33)를 준수해야 하는데, 단지 보육실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합반을 한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아동의 안전, 실내 공기, 보육실의 영역별 구성, 교사의 근무환경 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권과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보육실 수 부족”을 40%대 이상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광주전라권은 “1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를 보육하기 어려워”(37.5%)를, 대구경북권은 “보육실 면적이 넓어서”(32.4%), 강원제주권은 “보육 중 교사가 잠시 자리비움이 가능해서”(30.4%)를 1순위로 꼽았다. 즉, 투담임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가 지역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과 가정은 “보육실 수 부족”을, 민간은 “보육실 면적이 넓어서”를 1순위로 꼽았다. 현원규모가 29명 이하, 반편성 5개 미만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 수 부족”으로 투담임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현원규모 50명 이상, 반편성 11개 이상 등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보육실 면적이 넓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3-9〉 투담임제 실시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학부모 요청	한명 교사 보육의 어려움	보육중 자리 비움 가능	교사역량 강화 (고경력+ 저경력)	보육실 면적이 넓어서	보육실 수 부족	기타	계 (사례수)
전체(1순위)	3.3	21.4	21.4	1.2	20.6	30.5	1.6	100.0(243)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1.2	21.0	22.2	0.0	11.1	43.2	1.2	100.0(81)
대전충청권	3.8	15.4	26.9	0.0	23.1	26.9	3.8	100.0(26)
광주전라권	6.3	37.5	21.9	0.0	21.9	12.5	0.0	100.0(32)
대구경북권	2.9	20.6	17.6	8.8	32.4	14.7	2.9	100.0(34)
부산울산경남권	0.0	17.0	14.9	0.0	25.5	40.4	2.1	100.0(47)
강원제주권	13.0	17.4	30.4	0.0	21.7	17.4	0.0	100.0(23)
$\chi^2(df)$				57.00(30)**				
설립유형								
국공립	2.2	21.7	10.9	2.2	26.1	32.6	4.3	100.0(46)
민간	3.6	19.1	27.3	0.9	26.4	20.9	1.8	100.0(110)
가정	3.4	24.1	19.5	1.1	10.3	41.4	0.0	100.0(87)
$\chi^2(df)$				22.69(12)*				

(표 III-3-9 계속)

구분	학부모 요청	한명 교사 보육의 어려움	보육중 자리 비율 가능	교사역량 강화 (고경력+ 저경력)	보육실 면적이 넓어서	보육실 수 부족	기타	계 (사례수)
현원규모								
20명 미만	1.4	24.7	20.5	1.4	17.8	34.2	0.0	100.0(73)
20-29명	3.5	24.6	15.8	1.8	10.5	43.9	0.0	100.0(57)
30-49명	4.2	29.2	25.0	0.0	22.9	16.7	2.1	100.0(48)
50명 이상	4.6	9.2	24.6	1.5	30.8	24.6	4.6	100.0(65)
				$\chi^2(df)$ 29.60(15)*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2.5	21.3	21.3	1.3	10.0	43.8	0.0	100.0(80)
5개	4.5	27.3	18.2	2.3	18.2	29.5	0.0	100.0(44)
6-10개	3.3	18.7	26.4	0.0	26.4	22.0	3.3	100.0(91)
11개 이상	3.6	21.4	10.7	3.6	35.7	21.4	3.6	100.0(28)
				$\chi^2(df)$ 27.71(18)				
운영사항								
투담임제만 시행	2.1	26.6	20.2	0.0	12.8	37.2	1.1	100.0(94)
모두 시행	4.0	18.1	22.1	2.0	25.5	26.2	2.0	100.0(149)
				$\chi^2(df)$ 11.74(6)				
1+2순위	7.4	32.1	46.5	9.1	36.6	39.9	1.6	(243)

주: 2016년과 2017년에만 실시한 경우와 두 해 모두 실시한 경우 모두 응답한 결과임.

* $p < .05$, ** $p < .01$

4. 탄력보육과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

가. 탄력보육의 장단점

1) 장점

탄력보육의 장점으로는 “기관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진급 시 1-2명의 초과 수용 가능”(29.1%), “수요자의 요구 반영”(11.4%) 이다(1순위 응답기준). 중복응답 결과는 “기관운영에 실질적인 도움”과 “진급 시 1~2명의 초과 수용 가능”이 공동 1순위로 나왔다.

전 권역에서 “기관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장 많이 나왔다. 국공립에 비해 민간과 가정이 “기관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탄력보육만 시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모두 비시행하는 경우도 “기관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탄력보육 담당 “교사에게 수당 지급”은 1순위, 중복응답 결과 모두 낮게 나와서, 탄력보육은 교사에게는 장점이 거의 없고,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표 III-4-1〉 탄력보육의 장점

단위: %(명)

구분	기관 운영에 실질적 도움	진급시 1-2명 초과수용 가능	교사에게 수당 제공	수요자 요구 반영	특별한 장점 없음	계 (사례수)	χ^2 (df)
전체(1순위)	48.4	29.1	3.2	11.4	7.9	100.0(316)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43.5	32.4	1.9	12.0	10.2	100.0(108)	24.13(20)
대전충청권	50.0	33.3	4.8	4.8	7.1	100.0(42)	
광주전라권	53.7	34.1	2.4	4.9	4.9	100.0(41)	
대구경북권	52.5	25.0	2.5	10.0	10.0	100.0(40)	
부산울산경남권	49.1	16.4	3.6	25.5	5.5	100.0(55)	
강원제주권	50.0	33.3	6.7	3.3	6.7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34.6	28.8	3.8	21.2	11.5	100.0(52)	12.75(8)
민간	53.3	26.7	4.4	7.4	8.1	100.0(135)	
가정	48.8	31.8	1.6	11.6	6.2	100.0(129)	
현원규모							
20명 미만	48.5	26.7	2.0	14.9	7.9	100.0(101)	11.70(12)
20-29명	48.7	37.2	3.8	7.7	2.6	100.0(78)	
30-49명	45.9	27.9	4.9	13.1	8.2	100.0(61)	
50명 이상	50.0	25.0	2.6	9.2	13.2	100.0(7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47.5	29.5	3.3	13.9	5.7	100.0(122)	8.06(12)
5개	51.6	31.3	3.1	6.3	7.8	100.0(64)	
6-10개	49.5	27.7	4.0	10.9	7.9	100.0(101)	
11개 이상	41.4	27.6	0.0	13.8	17.2	100.0(2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시행	50.0	29.2	4.2	6.3	10.4	100.0(48)	7.30(12)
투담임제만시행	46.8	28.7	2.1	11.7	10.6	100.0(94)	
모두 시행	48.3	30.9	2.7	12.8	5.4	100.0(149)	
모두 비시행	52.0	20.0	8.0	12.0	8.0	100.0(25)	
1+2순위	59.5	59.5	9.2	24.7	15.8	(316)	기타

2) 단점

탄력보육의 단점에서 “교사의 업무과중”이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앞서, 장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들의 안전 문제” “교사의 심리적 부담 과중” 순으로 나왔다. 탄력보육 담당 “교사만 수당 지원”은 아동이 추가로 들어오면, 급간식, 행정업무, 차량운행 등의 제반 사항들이 늘어나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 운전사 등의 업무도 늘어나는데, 수당은 교사에게만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중복응답 결과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대전충청권, 강원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교사업무과중”이 가장 많았다. 전자는 “아이들 안전문제”, 후자는 “아이들 안전문제” “교사의 심리적 부담 과중”이 1순위로 나왔다. 국공립과 가정은 “교사의 업무과중”을, 민간은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민간에서 “특별한 단점 없음”이 20.0%로 2순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탄력보육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4-2〉 탄력보육의 단점

구분	교사 업무 과중	아이들 안전 문제	교사 심리적 부담과중	교사만 수당 지원	기 타	특별한 단점 없음	단위: %(명)	
							계 (사례수)	χ^2 (df)
전체	29.1	21.8	20.6	15.5	0.9	12.0	100.0(316)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32.4	25.0	20.4	13.0	0.0	9.3	100.0(108)	33.26(25)
대전충청권	40.5	19.0	11.9	11.9	0.0	16.7	100.0(42)	
광주전라권	14.6	24.4	19.5	22.0	0.0	19.5	100.0(41)	
대구경북권	32.5	15.0	20.0	15.0	2.5	15.0	100.0(40)	
부산울산경남권	32.7	16.4	23.6	12.7	3.6	10.9	100.0(55)	
강원제주권	10.0	30.0	30.0	26.7	0.0	3.3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36.5	17.3	21.2	13.5	1.9	9.6	100.0(52)	22.67(10)*
민간	19.3	22.2	21.5	16.3	0.7	20.0	100.0(135)	
가정	36.4	23.3	19.4	15.5	0.8	4.7	100.0(129)	
현원규모								
20명 미만	28.7	23.8	17.8	18.8	2.0	8.9	100.0(101)	15.38(15)
20-29명	35.9	19.2	20.5	15.4	0.0	9.0	100.0(78)	
30-49명	24.6	24.6	27.9	6.6	1.6	14.8	100.0(61)	
50명 이상	26.3	19.7	18.4	18.4	0.0	17.1	100.0(76)	

(표 III-4-2 계속)

구분	교사 업무 과중	아이들 안전 문제	교사 심리적 부담과중	교사만 수당 지원	기 타	특별한 단점 없음	계 (사례수)	χ^2 (df)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3.6	20.5	18.9	18.9	0.8	7.4	100.0(122)	14.02(15)
5개	32.8	25.0	21.9	9.4	0.0	10.9	100.0(64)	
6-10개	24.8	20.8	21.8	13.9	2.0	16.8	100.0(101)	
11개 이상	17.2	24.1	20.7	20.7	0.0	17.2	100.0(2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31.3	16.7	25.0	10.4	0.0	16.7	100.0(48)	13.20(15)
투담임제만 시행	36.2	25.5	19.1	10.6	1.1	7.4	100.0(94)	
모두 시행	24.2	20.8	20.1	19.5	1.3	14.1	100.0(149)	
모두 비시행	28.0	24.0	20.0	20.0	0.0	8.0	100.0 (25)	
1+2순위	40.5	39.2	37.3	22.5	1.3	24.1	(316)	

* $p < .05$

나. 투담임제의 장단점

1) 장점

투담임제의 장점으로서는 “교사에게 휴식제공”이 약 40%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교사들끼리 상호 장점 공유”, “보육실의 효율적 운영” “아이들에게 폭넓은 교우관계 제공” 순으로 나왔다(1순위 응답기준). 중복응답에서는 1순위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나, “교사업무 부담 완화”(23.4%)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탄력보육은 교사에게 업무과중, 심리적 부담과중 등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투담임제는 교사에게 “교사업무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권역 전체, 국공립 등에서 “교사에게 휴식 제공”을 장점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표 III-4-3〉 투담임제의 장점

구분	교사 에게 휴식 제공	교우 관계 확대	교사 간 장점 공유	보육실 효율적 운영	교사 업무 부담 완화	기 타	특별한 장점 없음	계 (사례수)	χ^2 (df)
전체(1순위)	39.9	13.3	18.7	16.1	7.3	0.3	4.4	100.0(316)	
기관 소재지 권역									

단위: %(명)

(표 III-4-3 계속)

구분	교사 에게 휴식 제공	교우 관계 확대	교사 간 장점 공유	보육실 효율적 운영	교사 업무 부담 완화	기 타	특별한 장점 없음	계 (사례수)	χ^2 (df)
서울경기권	38.0	14.8	16.7	17.6	7.4	0.0	5.6	100.0(108)	21.87(30)
대전충청권	40.5	9.5	16.7	14.3	11.9	0.0	7.1	100.0(42)	
광주전라권	34.1	24.4	17.1	19.5	4.9	0.0	0.0	100.0(41)	
대구경북권	47.5	7.5	25.0	10.0	7.5	0.0	2.5	100.0(40)	
부산울산경남권	43.6	9.1	21.8	14.5	3.6	1.8	5.5	100.0(55)	
강원제주권	36.7	13.3	16.7	20.0	10.0	0.0	3.3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55.8	7.7	23.1	7.7	3.8	1.9	0.0	100.0(52)	21.38(12)*
민간	36.3	11.1	18.5	18.5	9.6	0.0	5.9	100.0(135)	
가정	37.2	17.8	17.1	17.1	6.2	0.0	4.7	100.0(129)	
현원규모									
20명 미만	34.7	16.8	19.8	18.8	6.9	0.0	3.0	100.0(101)	15.92(18)
20-29명	44.9	14.1	15.4	15.4	5.1	0.0	5.1	100.0(78)	
30-49명	36.1	9.8	21.3	13.1	9.8	0.0	9.8	100.0(61)	
50명 이상	44.7	10.5	18.4	15.8	7.9	1.3	1.3	100.0(7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6.1	17.2	15.6	18.0	7.4	0.0	5.7	100.0(122)	25.07(18)
5개	43.8	9.4	20.3	14.1	3.1	1.6	7.8	100.0(64)	
6-10개	42.6	11.9	15.8	18.8	8.9	0.0	2.0	100.0(101)	
11개 이상	37.9	10.3	37.9	3.4	10.3	0.0	0.0	100.0(2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31.3	12.5	14.6	14.6	2.1	0.0	25.0	100.0(48)	67.43(18)***
투담임제만 시행	37.2	11.7	26.6	16.0	7.4	0.0	1.1	100.0(94)	
모두 시행	45.0	12.8	15.4	17.4	8.1	0.7	0.7	100.0(149)	
모두 비시행	36.0	24.0	16.0	12.0	12.0	0.0	0.0	100.0(25)	
1+2순위	48.1	20.9	38.9	37.0	23.4	0.3	8.9	(316)	

* $p < .05$, ** $p < .01$

2) 단점

투담임제가 업무부담 완화라는 차원에서 교사에게 긍정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으나,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담임제의 단점으로 “교사 간 균형있는 업무 분장이 어려움”(31.3%)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육면적 협소화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문제” 25.0%, “특별한 단점 없음” 21.5%,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

미흡” 20.9% 순이다(1순위 응답결과). 중복응답 결과, 1순위는 “특별한 단점 없음”이 43.0%로 1순위로 나왔다. 투담임제는 탄력보육에 비해 현장에서 큰 이점이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구경북권, 민간은 “특별한 단점 없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표 III-4-4〉 투담임제의 단점

단위: %(명)

구분	교사간 균형있는 업무분장 어려움	아이들에 대한 교사 책임감 미흡	보육면적 협소화로 인한 아이들 안전문제	기타	특별한 단점 없음	계 (사례수)	χ^2 (df)
전체	31.3	20.9	25.0	1.3	21.5	100.0(316)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32.4	22.2	23.1	0.9	21.3	100.0(108)	15.36(20)
대전충청권	40.5	23.8	21.4	0.0	14.3	100.0(42)	
광주전라권	26.8	22.0	31.7	0.0	19.5	100.0(41)	
대구경북권	30.0	10.0	22.5	5.0	32.5	100.0(40)	
부산울산경남권	29.1	21.8	25.5	1.8	21.8	100.0(55)	
강원제주권	26.7	23.3	30.0	0.0	20.0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25.0	26.9	26.9	1.9	19.2	100.0(52)	35.99(8)***
민간	31.1	14.8	17.0	1.5	35.6	100.0(135)	
가정	34.1	24.8	32.6	0.8	7.8	100.0(129)	
현원규모							
20명 미만	30.7	29.7	25.7	2.0	11.9	100.0(101)	27.36(12)**
20-29명	28.2	21.8	32.1	0.0	17.9	100.0(78)	
30-49명	32.8	21.3	16.4	0.0	29.5	100.0(61)	
50명 이상	34.2	7.9	23.7	2.6	31.6	100.0(7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4.4	26.2	28.7	0.0	10.7	100.0(122)	28.71(12)**
5개	26.6	17.2	32.8	1.6	21.9	100.0(64)	
6-10개	28.7	15.8	20.8	3.0	31.7	100.0(101)	
11개 이상	37.9	24.1	6.9	0.0	31.0	100.0(2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 시행	35.4	29.2	20.8	0.0	14.6	100.0(48)	18.93(12)
투담임제만 시행	26.6	27.7	27.7	1.1	17.0	100.0(94)	
모두 시행	33.6	12.1	24.8	2.0	27.5	100.0(149)	
모두 비시행	28.0	32.0	24.0	0.0	16.0	100.0(25)	
1+2순위	41.8	35.8	37.3	2.2	43.0	(316)	

** $p < .01$, *** $p < .001$

다.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반 편성 개선방안

어린이집의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반 편성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교사대아동 비율은 준수하되 보조교사 배정”이 가장 많이 꼽았다. 인력배치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하향 조정”과 “정원 내에서 자율적 반편성 운영”이 동일하게 2순위로 나왔다(1순위 응답결과 기준). 그러나 중복응답 결과는 1순위가 바뀌었는데, “정원 내에서 자율적 반편성 운영”이 63.0%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은 “현행 교사대아동비율은 준수하되 보조교사 배정”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하향 조정” 순이다.

서울경기권과 강원제주권은 교사대아동비율 하향 조정을, 광주전라권은 정원 준수 내에서 자율적 반편성 운영을 나머지 권역은 보조교사 배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에 따라 개선방안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은 비율 하향 조정, 민간은 자율적 반편성 운영, 가정은 보조교사 배정을 1순위로 꼽았다. 현원규모 30명 이상, 반편성 6개 이상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자율적 반편성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컸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탄력보육만 시행, 모두 시행하는 경우 자율적 반편성 운영을 가장 많이 희망했고, 투담임제만 시행하는 경우는 비율 하향 조정, 모두 비시행은 보조교사 배정을 희망하는 등 운영사항에 따라 희망하는 개선방안이 유의미하게 달랐다.

〈표 III-4-5〉 어린이집 반편성 개선방안

단위: %(명)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현행비율 준수하되 보조교사 배정	탄력 보육 운영 금지	투담 임제 운영 금지	정원 내에서 자율적 반편성 운영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1순위)	31.0	33.2	1.6	0.6	31.0	2.5	100.0(316)	
기관 소재지 권역								
서울경기권	46.3	22.2	1.9	0.9	25.0	3.7	100.0(108)	39.75(25)*
대전충청권	21.4	47.6	2.4	0.0	26.2	2.4	100.0(42)	
광주전라권	24.4	29.3	2.4	2.4	39.0	2.4	100.0(41)	
대구경북권	17.5	45.0	2.5	0.0	30.0	5.0	100.0(40)	
부산울산경남권	18.2	43.6	0.0	0.0	38.2	0.0	100.0(55)	
강원제주권	40.0	23.3	0.0	0.0	36.7	0.0	100.0(30)	

(표 III-4-5 계속)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현행비율 준수하되 보조교사 배정	탄력 보육 운영 금지	투담 임제 운영 금지	정원 내에서 자율적 반편성 운영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설립유형								
국공립	48.1	32.7	0.0	0.0	17.3	1.9	100.0(52)	49.29(10)
민간	21.5	23.0	1.5	0.7	48.1	5.2	100.0(135)	***
가정	34.1	44.2	2.3	0.8	18.6	0.0	100.0(129)	
현원규모								
20명 미만	30.7	43.6	2.0	0.0	23.8	0.0	100.0(101)	
20-29명	32.1	33.3	1.3	1.3	29.5	2.6	100.0(78)	17.75(15)
30-49명	27.9	24.6	1.6	0.0	42.6	3.3	100.0(61)	
50명 이상	32.9	26.3	1.3	1.3	32.9	5.3	100.0(76)	
반편성 규모								
5개 미만	30.3	41.0	1.6	1.6	24.6	0.8	100.0(122)	
5개	39.1	32.8	1.6	0.0	25.0	1.6	100.0(64)	20.77(15)
6-10개	27.7	24.8	2.0	0.0	41.6	4.0	100.0(101)	
11개 이상	27.6	31.0	0.0	0.0	34.5	6.9	100.0(29)	
운영사항								
탄력보육만시행	22.9	29.2	2.1	4.2	41.7	0.0	100.0(48)	51.88(15) ***
투담임제만시행	48.9	31.9	0.0	0.0	17.0	2.1	100.0(94)	
모두 시행	23.5	32.2	1.3	0.0	38.9	4.0	100.0(149)	
모두 비시행	24.0	52.0	8.0	0.0	16.0	0.0	100.0(25)	
1+2순위	35.4	53.8	4.7	3.8	63.0	4.4	100.0(316)	

* $p < .05$, *** $p < .001$

IV.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조사

이 장에서는 탄력보육과 투담임제(복수담임제)에 대해 원장 및 교사의 운영자 입장과 학부모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원장 면담조사 결과

가. 원장 특성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원장은 총 6명이다. 국공립 4사례, 직장 1사례, 민간 1사례가 참여하였다. D기관을 제외한 5개 기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에서 탄력보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A와 F기관에서는 만2세, B기관에서는 만4·5세 통합반에서 탄력보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6개 기관 모두 투담임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영아반 또는 장애통합 및 혼합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기관은 일부 반을 제외하고 전(全) 연령 반에서 투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면담조사 참여 기관 특성

기관명	설립 주체	현원/ 정원	탄력보육		투담임제	
			실시 유무	실시 연령 반 (교사대아동비율)	실시 유무	실시 연령 반 (교사대아동비율)
A	국공립	106/126	o	만2세(1:8)	o	만1세(2:10) 만2세(2:15)
B	국공립	50/53	o	만 4·5세 통합반 (1:21)	o	만3세 장애통합반 - 일반교사 1명(1:11), - 특수교사 1명(1:3)
C	국공립	47/55	x	-	o	만4·5세 혼합 - 일반교사 1명(1:10), - 특수교사 1명(1:3)
D	국공립	72/72	x	-	o	만2세(2:14)

(표 IV-1-1 계속)

기관명	설립 주체	현원/ 정원	탄력보육		투담임제	
			실시 유무	실시 연령 반 (교사대아동비율)	실시 유무	실시 연령 반 (교사대아동비율)
E	직장	216/270	x	-	o	전(全) 연령 반 실시 *일부 반 원담임제 실시
F	민간	86/88	o	만2세(1:8)	o	만1세(2:9)

나. 탄력보육에 대한 원장 의견조사

1)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및 반편성의 어려움

현행 교사대아동비율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관 3사례,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기관 2사례, 적절하다고 응답한 기관 1사례였다. 반 편성의 어려움에 대해 A기관 원장은 이사 등으로 인해 중간에 퇴원하는 영유아들이 있어 원장 입장에서 탄력보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B기관 원장은 만3세반 보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C기관 원장은 지역 특성 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운영지원을 필요로 했다. E기관 원장은 입소를 신청한 영아의 대기자가 많은 경우 보육실 공간의 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표 IV-1-2〉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및 운영의 어려움: 원장

기관명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에 대한 의견	반 편성의 어려움
A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초에 현원수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관 운영 입장에서는 탄력보육의 필요성을 느낌(이사 등으로 중간에 퇴원하는 아이들이 꽤 있음).
B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세반 보육이 가장 어려움(1: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봄) 아동수가 적으면 인건비 문제 발생
C	연령에 따라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의 경우 지역 특성 상 아이들이 없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정원을 채우지 못해 기관 운영이 어려움.

(표 IV-1-2 계속)

기관명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에 대한 의견	반 편성의 어려움
D	연령에 따라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영유아가 많아 정원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음. • 수요 연령이 한 개 연령으로 쏠릴 때 대기 인원은 많지만 모집할 수 없어 안타까움. • 영아수 비중이 높을 경우 보육실 공간부족으로 인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함.
E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한계 • 영유아들의 다양한 활동하기 위한 공간 부족 • 보육수요를 모두 해소하지 못함 (만1-2세 연령의 대기 원아 많음).
F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원아모집 시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음을 체감 • 반 구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운영이 어려움. • 학기 중 유아반에서 이어나 다른 기관으로 옮김으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 2학기에 영아들을 모집. • 만2세 모집이 수월해야 만3세 단독 반 운영이 가능 • 영아반 모집이 안 될 경우 다음해 유아반을 부득이하게 혼합반으로 운영해야 함.

2) 탄력보육 실시 이유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기관에서 탄력보육 실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한 원장은 3사례였다. E기관은 기관 특성 상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탄력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A기관은 부모의 요청에 의해 또는 만 4,5세 유아반을 혼합반 하면서 탄력보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B기관에서는 기관운영이 어려워서 탄력보육 편성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실시한다는 일반적인 의견과 더불어, 유아반이 혼합반일 경우에 탄력보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F기관은 만 1세에서 만 2세반으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모두 재원 할 경우 새로운 반을 증설할 수 없어 탄력보육 실시한다고 하였다.

〈표 IV-1-3〉 탄력보육 실시 이유: 원장

기관명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둥이 중 발달이 느린 한명이 1세반에 남아있게 되어 만1세 신입원아 모집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심경변화로 인해 만2세반으로 올라가게 되었음(만2세반 탄력보육 시행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탄력편성을 통해 비용 충당하는 경우 생김. • 유아반을 통합하면서 탄력보육 실시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세에서 만 2세반으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모두 재원 할 경우 새로운 반을 증설할 수 없어 탄력보육 실시

3) 탄력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본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원장에게 탄력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탄력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A기관 원장은 교사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부모들의 건의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F기관 원장은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운영 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E기관 원장은 탄력보육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직의 원이 되어 채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탄력보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IV-1-4〉 탄력보육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원장

기관명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증가로 교사들의 스트레스 증가 • 부모들의 건의 증가 • 공간이 좁아짐에 따라 아이들의 불편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증가로 교사들의 스트레스 증가 • 아동 수 증가는 아이들 간의 마찰 증가시킴(장시간의 보육과 공간부족)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증가로 교사들의 스트레스 증가 • 아이들의 안전문제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45세의 경우 다른 시설을 다녀 본 경험이 있어 영아에 비해 적응이 빠를 수 있으나 영아들은 적응 기간이 길어 이로 인해 학급 분위기가 어수선해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교사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보육의 질 저하 •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저해하여 보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떨어짐. •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교사들의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어려움이 따름. • 보조교사 투입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없음.

4) 탄력보육 허용 희망기준

17개 시도별로 탄력보육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허용 기준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A와 B기관 원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장에게 정원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E기관 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을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수요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달라 기준에 대한 편차가 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표 IV-1-5〉 탄력보육 허용 희망기준 및 개선점: 원장

기관명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특성에 따라 원장에게 정원 내 반편성에 대한 자율권 부여 희망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특성에 따라 기관장의 정원 편성 자율권 부여 희망(총 정원 60명 미만의 경우 반별로 정원 편성을 했을 때 부득이하게 유아들을 혼합하거나 퇴소시켜야 하는 사례가 생김) 교사와 부모의 동의와 양해 관련 부처에서의 지침이 늦게 배부되어 학기 초 부모들에게 공지 할 때 혼란이 있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동의와 양해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동의와 양해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닌 기관장들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많아 탄력보육 허용에 반대함.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시도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기준의 편차가 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음. 기관장의 입장에서 수당 지급 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탄력보육 기피 현상 생김.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중에 유아반에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이 되지 않으므로 중간에 퇴소가 정해진 아이가 있을 때는 학기초부터 탄력보육 허용 필요 탄력보육 허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필요

다. 투담임제의 장단점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원장에게 투담임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투담임제 장점에 대해 A기관 원장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교사 간에 감시

자가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C기관 원장은 병가 등으로 인한 교사의 부재를 투담임제 실시로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D기관 원장은 신입교사가 경력교사에게 배울 수 있는 직무환경이 형성되어진다고 하였다. 투담임제 단점에 대해 6개 기관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교사 간 교육관의 가치 차이와 성격차이로 학급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투담임제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 원장

기관명	장점	단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듦. 교사 상호 협력 및 감시자가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간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아이들에게 피해를 줌.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의 순환여지가 생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교육관이 다를 때 학급운영의 어려움. 보육실 면적이 좁을 경우 교사와 아이들의 피로도 증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부재로 인한 공백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간 교육관과 성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아이들이 피해를 줌.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에 사무원(행정업무)이 없는 경우 주임교사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투담임을 할 경우 다른 선생님이 주임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신입교사는 경력교사에게 많이 배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음.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간의 역량과 장점을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음.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좋은 보육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함 교사의 부재로 인한 공백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간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 스트레스 증가 및 보육의 질이 낮아지며 이직 원인이 됨. 경력, 나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부담이 줄어듦.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간의 배려가 없을 시 학급 운영이 어려움.

라.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어린이집 반편성 시 개선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6개의 기관에서 교사대아 동비율 축소와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나타났다. B기관 원장은 영

유아 발달 검사를 의무화하여 반편성 시 참고하여 교사대아동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F기관 원장은 보육료를 현실화 했을 때 교사대아동 비율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표 IV-1-7〉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원장

기관명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필요(아동비율 축소로 인해 교사 일자리 창출 가능) 보육료 현실화 시급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발달 검사 의무화 필요 장애 전담 교사 지원 필요 교사대아동비율 축소가 필요하지만 보육료 현실화 시급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자체에서의 지원 필요 인력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지원 필요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필요(만3세) 현재 법적 기준의 보육실 면적은 아이들이 장시간동안 생활하기에 좁아 보육실 면적 확장 필요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에서 제시한 연령별 보육료 단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없음 체계적인 직무교육 실시 유치원과 동일 한 교직원 처우개선 필요(약 40만원 차이 발생)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를 현실화 했을 때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바람직 서울시 탄력보육 기준 완화 필요. 원칙은 지키되 탄력편성 가능인원 확대 필요

2. 교사 면담조사 결과

가. 교사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교사는 총 5명이다.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2명, 민간어린이집 2명, 국공립어린이집 1명이다. 현 담당반이 투담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사는 3명, 누리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교사 1명, 보조교사 지원을 받고 있는 교사 1명으로 나타났다.

〈표 IV-2-1〉 면담조사 참여 교사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학력	총 교사 경력 (현 기관경력)	기관유형	현 담당 연령반	교사 대 아동비율	비고
A	28	대졸	4년 5개월(4년 5개월)	직장	만3세	2:18	투담임
B	27	대졸	3년 6개월(11개월)	국공립	만2세	2:11	투담임
C	24	전문대졸	3년 6개월(1년 6개월)	민간	만3세	2:24	투담임
D	27	대졸	4년 6개월(6개월)	직장	만2세	2:14	투담임
E	37	전문대졸	5년 6개월(4년 10개월)	민간	만2세	1:8	탄력보육

나. 탄력보육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1)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및 학급운영의 어려움

탄력보육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 교사대아동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3사례, 아동의 특성에 다르다고 응답한 교사 1사례, 보조교사 투입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 1사례였다. 학급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A교사는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배정 받았을 때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C교사는 기관에 보조교사가 있지만 여러 반에 투입되어 실질적 도움은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D교사는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어지는 만2세아들이 개인차가 심해 교사가 영아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표 IV-2-2〉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및 학급 운영의 어려움: 교사

사례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에 대한 의견	학급 운영 시 어려움
A	편성된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라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에 발달문제, 발달장애가 있는 영유아들이 1~2명 있으면 경우 다른 아이들의 돌봄이 어려움. • 만1세는 비율이 적절하지 않음(영아의 배변처리 시 다른 영아들은 안전사고에 노출). • 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 진급하는 만2세와 만3세의 법적 연령 기준 조정 필요

(표 IV-2-2 계속)

사례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에 대한 의견	학급 운영 시 어려움
B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세가 되면 교사대아동비율이 급증하여 교사·부모·유아 모두 혼란스러움. 현행 비율은 현장에서는 무의미함. 비율 조정 필요
C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명의 보조교사가 여러 반을 담당하므로 실질적 도움은 받지 못함. 성별에 따른 놀이 성향이나 발달수준이 달라서 남녀 성비가 맞지 않는 경우 반 운영이 어려움. 편성된 아동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규칙적이지 않은 출퇴근시간으로 인한 교사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영유아 안전사고 대처능력 저하됨.
D	적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담당 아동수가 많음. 영유아 지도 외에 기타 업무(서류, 수업준비)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명시된 교사 휴게 시간을 현장에서 준수하기가 어려우므로 교사 피로도 증가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시기인 만2세의 경우 개인차가 심함. 현재 비율에서는 교사가 영아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란 한계가 있음. 바깥활동 시 현행 비율에서는 아동을 통솔하기 어려움.
E	보조교사 투입으로 인해 아동비율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반 운영 시 어려움 점 없음.

2) 탄력보육 실시 이유

기관에서 탄력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3명의 교사가 기관의 재정운영을 위함이라고 답변하였으며 E교사는 기존 원아가 모두 재원해서 올라갈 경우 탄력보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표 III-2-9 참조).

〈표 IV-2-3〉 탄력보육 실시 이유: 교사

사례	내용
B	• 탄력보육 아동당 기관으로 들어오는 지원금 때문이라 생각됨.
C	• 기관 입장에서는 원아수가 많으면 이익이므로 탄력보육을 당연시 여김.
D	• 현재 보육료로는 기관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임.
E	• 기존의 반 원아들이 모두 진급할 경우 탄력보육 실시

3) 탄력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탄력보육으로 인해 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A교사는 아동 수 증가로 인해 활동영역이 좁아지면서 학급 분위기가 산만해짐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C교사는 아동 수 증가에 대해 인력지원이 없을 경우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D교사는 학기 중의 아동 수 증가는 재원아들에게 환경적 변화를 주어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며 교사 한명이 신입원아 적응 및 재원아 지도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표 IV-2-4〉 탄력보육으로 인한 학급운영의 어려움: 교사

사례	내용
A	• 법적 기준의 보육실 크기 적당하지 않음. 아동수가 증가하면 활동 면적이 좁아지면서 산만해짐.
B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 신입 원아 적응으로 인해 기존 원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어려움. • 아동 수 증가로 인한 관련 서류 및 기타 업무 증가 • 학기 중 영유아의 이동은 교사와 기존 원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줌.
C	• 인력지원 없는 아동 수 증가는 안전사고를 유발함. • 아동 수 증가로 인해 보육실 내 활동 면적이 좁아짐. • 신입원아의 적응도 어렵고 보육실 분위기가 어수선힌해짐.
D	• 아동 수 증가로 인해 보육실 내 활동 면적 좁아짐. • 학기 중 아동 수 증가는 기존 아동이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신입원아는 새로운 또래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감이 큼. • 교사 혼자 신입원아 적응 및 기존원아 지도를 동시에 수행하기 힘들.
E	• 안전사고의 우려 • 아동 수 초과 시 보조교사 지원을 해주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4) 탄력보육 허용 기준

탄력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 지를 교사들에게 알아보았다. A, C, D교사는 탄력보육 실시 전 해당교사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교사는 영아반의 경우 탄력보육에 의해 아동 수 증가는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주어 연령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2-5〉 탄력보육 허용 희망기준: 교사

사례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개인적 발달 특성을 고려한 기준 필요 교사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함. 탄력보육 시 기관장이 이를 하게 된 이유와 법적 기준에 대해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시행. 발달단계 상 영아반은 탄력보육이 어려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은 탄력보육 시 교사의 동의는 구하지 않음. 아동이 추가 편성된 이유와 법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닌 아동이 추가된 상황에 충분한 설명 필요 현재 비율도 힘들. 추가 수당 받지 않고 탄력보육을 안하는 것을 희망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교사 지원 필요

다. 투담임제 장단점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교사에게 투담임제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투담임제 장점에 대해 A교사는 교사 간의 업무 분량을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B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E교사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투담임제 단점에 대해 B교사는 교사 간의 신경전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및 업무 분담교육 필요하다고 하였다. D교사는 교사 간의 지도 방식이 맞지 않거나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영유아들이 혼란을 느끼고 같은 연배 또는 경력차이가 많이 날 경우 관계형성이 힘들다고 하였다.

〈표 IV-2-6〉 투담임제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 교사

사례	장점	단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준에 따른 보육이 힘들지만 1:7보다는 2:14 비율이 조금 나음. • 손길이 닿지 않는 영유아까지 세심히 보육할 수 있음 • 교사 간 업무 분량을 나눌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끼리 맞지 않아 생기는 불화가 영유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가능 • 교사의 생리적 욕구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간 신경전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교사 인성교육 및 업무 분담교육 필요)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끼리 성향이 잘 맞고 협업이 될 경우 배울 점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명의 교사 부재로 인해 반에 남아 있는 교사가 지도해야 되는 경우 업무는 배가 됨.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높아짐.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간 지도방식이 맞지 않거나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영유아들에게 피해가 감. • 경력차이가 많이 날 경우 협력보다는 위계 관계가 형성됨.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운영 시 매번 상의하고 조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라.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어린이집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가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 C, D교사는 영유아의 교실내에서의 활동범위에 비해 보육실 면적이 좁아 보육실 면적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주장하였다.

〈표 IV-2-7〉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교사

사례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교사 지원 필요 • 아동의 성비 및 발달 상태를 고려한 반편성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수 증가에 대한 수당지급이 아닌 보조교사 지원 필요 • 보육실 면적 확장 필요. 현재 보육실 면적은 현장과 맞지 않은 최소화된 기준임. 영유아의 활동범위와 가구, 교재·교구 배치 등은 고려해야 함

(표 IV-2-7 계속)

사례	내용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보육실 공간이 여유롭지 못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개월 수 별 차이가 큰 영아반의 경우 월령 수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반 편성 희망. 상반기와 하반기 연령 수를 적절히 조절해 배치 기관 운영 목적이 아닌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입장을 고려 보육실 면적 확장 필요. 현재 인원에서 교실에서의 동적인 수업이 어려움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축소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교사가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함.

3. 부모 면담조사 결과

가. 부모 특성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부모는 총 7명이고 모두 어머니이다. 남아를 둔 부모 5 사례, 여아를 둔 부모 2사례가 참여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31세~38세였다. 외벌이 가정은 C 한 사례이고 나머지 6사례는 맞벌이 가정이었다. 본인의 직업은 보육교사, 회사원, 간호사, 자영업으로 다양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답한 결과이다.

〈표 IV-3-1〉 면담조사 참여 부모 특성

사례	자녀와의 관계	연령	학력	동거 가구 구성원 수 (본인 포함)	본인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A	모	38	4년제 이상 졸업	3명	보육교사	400만원
B	모	31	대학원 이상	3명	보육교사	500만원
C	모	33	4년제 이상 졸업	4명	주부	450만원
D	모	33	전문대졸	4명	회사원	600만원
E	모	34	전문대졸	3명	간호사	600만원
F	모	35	4년제 이상 졸업	6명	자영업	500만원
G	모	34	4년제 이상 졸업	5명	회사원	500만원

해당 자녀의 특성을 보면, 첫째아가 4명, 둘째아가 3명이다. 주양육자는 G사

례를 제외하고는 모라고 응답했다. 맞벌이 가정이라도 모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민간어린이집 3사례, 국공립 2사례, 가정어린이집 2사례이다.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는 생후 8개월~만3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면담조사 참여 부모의 자녀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출생순위	주양육자	어린이집	
					기관 유형	이용 시작 시기
A	여자	만 5세	1명 중 첫째	모	민간	만2세
B	여자	만 2세	1명 중 첫째	모	국공립	만1세
C	남자	만 0세	2명 중 첫째	모	국공립	만0세
D	남자	만 3세	2명 중 둘째	모	민간	생후 8개월
E	남자	만 3세	1명 중 첫째	모, 친조부모	민간	만3세
F	남자	만 3세	3명 중 둘째	모	가정	만1세
G	남자	만 2세	2명 중 둘째	친조부모	가정	만1세

나.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부모 의견조사

1)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에게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기관이 4사례, 설명해주지 않는 곳이 2사례, 부모 요청 시 설명해 주는 기관이 1사례였다.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의 교사대비율에 대해 적절하다 4사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3사례였다. 대부분의 부모가 한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보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동비율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표 IV-3-3〉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부모

사례	재원 기관에서의 교사대아동비율 설명 유무	재원 기관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자녀만 비율)	일반적인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의견
A	설명 해주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만 5세 1:20)	• 탄력편성 인원까지 다 채워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음.

(표 IV-3-3 계속)

사례	재원 기관에서의 교사대아동비율 설명 유무	재원 기관 교사대아동비율 적절성 (자녀반 비율)	일반적인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해당 반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하기 힘들. 영아반의 경우 한 명이라도 아동비율을 줄였으면 함.
B	부모 요청 시 설명해줌	적절하지 않음 (만 2세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반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취약한데 교사가 세심하게 보육하기 어려움.
C	설명해줌	적절함 (만 0세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교사에 비해 아동수가 많음. 안전사고 우려
D	설명해줌	적절함 (만 3세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반의 교사대아동비율이 많은 것 같음(만 3세반도 아동수를 10명 미만으로 조정 필요)
E	설명 해주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만 3세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명의 교사가 돌봐야 하는 아동 수가 많음.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없음.
F	설명해줌	적절함 (만 3세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비율이 많을 경우 제대로 된 보육이 어려울 것 같은데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하는 지 걱정됨.
G	설명해줌	적절함 (만 2세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기관의 인원은 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법정 기준인 1:7은 너무 많음 특성이 다른 여러 아이들을 교사 한명이 보육한다는 것이 불가능함

다. 탄력보육에 대한 부모 의견조사

탄력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탄력보육을 실시할 경우 A, B 부모는 교사의 업무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걱정하였다. F부모는 탄력보육으로 인한 아동 수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전염질환에 쉽게 노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하였다. 탄력보육 실시 전 적절한 절차에 대해 알아본 결과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가 기관에서 해당 반 부모에게 공지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 IV-3-4〉 탄력보육에 대한 의견: 부모

사례	내용	탄력보육 시 적절한 절차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과중으로 인해 교사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음. 아이들의 안전사고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에서 학부모들에게 따로 공지하지 않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알리고 해당 반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음 전염성 질환에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 전에 각 반 대표 부모에게 물어 봤으면 함. 영아반의 경우 탄력보육 실시 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원의 변동이 있을 시에도 해당 반 학부모에게 공지 요망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의 안전 교사의 스트레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반 전체 학부모들에게 공지 필요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 안전문제. 차량지도 및 원내 보육 시 안전에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반 교사의 동의 필요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의 안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반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지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의 안전 문제 기본생활습관 지도 문제 전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반 학부모에게 공지 필요. 그리고 학부모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줬으면 함.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의 안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 필요

라. 투담임제에 대한 부모 의견조사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에게 투담임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투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1사례였다. 투담임제를 경험하고 있는 C부모는 교사가 탄력적으로 학급을 운영함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투담임제를 반대하는 A부모는 교사 간이 마찰이 생길 경우 교사가 바뀌는 것을 우려하였다. F부모는 투담임제로 인해 교사와 아이 수가 두 배가 되지만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공간 부족하고 하였다.

〈표 IV-3-5〉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 부모

사례	투담임제 여부	투담임제에 대한 의견
A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담임제 반대. 교사 간의 마찰이 있을 시 해당 교사가 자주 바뀜. 투담임보다 보조교사 투입 필요
B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임과 한 반을 운영하게 될 경우 직급이 낮은 교사가 혼자 2배의 아동 수를 보육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해당 반 교사가 부재해서 원 담임으로 보육하는 경우, 다른 연령과 통합보육을 진행하기도 함.
C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통적으로 교사가 돌아가며 업무를 해서 좋아 보임. 아이가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와 애착 형성이 될 경우 담임교사에게 미안함이 있음.
D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투담임제가 좋을 것 같음. 아동 입장에서 여러 성향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 좋을 것 같음.
E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교사 투입 필요 교사끼리 업무 분담을 할 수 있어 긍정적임.
F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아이는 두 배가 되지만 공간이 두 배가 되지 않음.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공간이 부족해 보임. (투담임제 보다는)기존 교사대아동비율은 유지하면서 보조교사를 투입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듦.
G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한 명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음. 교사 간의 신경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음.

마.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에게 어린이집 반편성에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면담에 참여한 7명의 부모가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 중 F부모는 교사대아동비율을 줄이는데 개인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면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말하였다. A, D, G부모는 보조교사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3-6〉 반편성에 대한 개선점: 부모

사례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인력 투입 필요. 규모가 큰 기관은 보조인력이 투입되지만 보통 기관장이 보조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음.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야 함.

(표 IV-3-6 계속)

사례	내용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반만을 전담해주는 보조인력 투입 필요. 기관장 또는 사무인력이 보조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음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추가비용을 낼 의향이 있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반 교사가 부득이하게 바뀔 경우 해당 반 학부모들에게 공지 필요 •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 보다 교사 인력 추가 지원 필요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보조교사 투입 필요. 아이들의 안전사고 우려로 보조 인력이 투입되길 원하지만 한 명의 보조교사가 여러 반에 투입되는 경우는 반대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실내외 설치 기준 조정 필요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세 법정비율 조정 필요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대신 개인 비용을 추가해야 된다면 지불할 의향이 있음 • 보조교사 지원 필요 • 주기적으로 영유아 수를 파악한 후 인허가 허용. 기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부모의 혼란 야기됨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법정비율 조정 필요 • 보조교사 지원 필요. 교사들의 복지개선이 아이들 보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V. 어린이집 반편성 합리화 방안

이 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력보육과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1. 탄력보육 합리화 방안

가. 허용기준의 탄력화

1) 기관규모별 기준 달리 적용

어린이집 반편성은 동일 연령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장은 정원 내에서 연령별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해서 편성한다. 즉, 법적으로 연령별 반수에 대한 지침은 없다. 그러다보니, 정원이 작은 어린이집은 연령별 반편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정원이 53명인 어린이집인 경우 만 1세부터~만 5세까지 한 반씩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해서 반편성을 한다면,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20명, 만 5세 20명이어야 하는데(만 0세 제외) 이렇게 반편성하면 총 67명이므로 정원 53명을 초과한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해서 반편성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만 4, 5세 유아반을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 5세가 졸업하고 만 3세가 진급하면서 이 반이 교사대아동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원장은 진급 시 초과인원을 대비해서 만 3세를 법정 기준인 15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학부모는 자리가 있는 데도 아이를 받지 않는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어린이집 반편성을 둘러싸고 많은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령별 반편성이 어려운 정원수가 작은 어린이집은 탄력보육 기준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반수가 없고, 영유아기의 특성상 입퇴소가 일정치 않으므로 일관된 반편성을 하기도 어렵는데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하면서 연령별 반편성을 한다는 것은 정원수가 작은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현재 약 4만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장이 처한 현실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사대아동 비율은 보육품질을 유지하는 안정장치라는 점에서 정부 지침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의 다양성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지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애초부터 연령별 반편성이 어려운 정원수가 작은 어린이집의 탄력보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반편성 관련 기관 정원수가 작다는 기준점에 대한 면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 회의에서는 정원 6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설립유형별 기준 달리 적용

탄력보육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다. 탄력보육의 장점으로 “기관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절반 가까이 가장 많이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탄력보육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가 ‘보육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설립유형별로 실시 이유의 차이가 있었다. 국공립은 “기관운영의 어려움”보다는 “학부모 요청”과 “정원충족”을 위해서 탄력보육을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민간은 “기관운영의 어려움”의 응답(36.3%)이 가장 많았다. 가정어린이집은 “진급 시 1~2명 초과”로 인해 탄력보육을 실시한다는 응답(36.2%)이 가장 많았다. 면담조사에서도 국공립과 민간 원장님들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립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초과보육을 금지할 때, 구분했던 설립유형을 참고로 한다. 즉, 2014년 초과보육 금지의 우선 대상 어린이집 국공립과 직장이었고, 법인·민간·가정 등은 다음 순으로 금지했다. 탄력보육의 허용 기준을 설립유형별로 달리한다면, 국공립과 직장의 허용기준과 법인·민간·가정의 허용기준으로 구분한다.

예를 든다면, 국공립과 직장은 현행 탄력보육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법인·민간·가정은 2014년 이전 초과보육의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공립과 직장은 만 1세반은 1명만 탄력보육이 가능하지만, 법인·민간·가정의 만 1세반은 2명까지 가능하다. 물론, 다른 연령은 현행 초과보육 기준을 준수한다. 단, 만 1세반을 2명까지 허용하는 대신, 이에 수반하는 조건도 강화한다. 예컨대, 해당 반 학부모에게 공지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서류로 구비해 하게 한다거나 보육실 면적

영유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보육품질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탄력보육 허용기준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단지 '보육료' 때문에 초과보육을

2) 영아반 반편성 기준 세분화

탄력보육은 만 1세반과 만 2세반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만 3세는 유치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의 정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만 3세에 신규 아동을 모집하기 보다는 영아반의 재원아를 가급적 모두 진급하기를 원한다(영아전담어린이집 제외). 그러다 보니, 만 1세와 만 2세반에 탄력보육반을 편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 영아들의 발달 차이는 개인별, 월별 등의 차이가 크다.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도 1월에 출생한 영아와 12월에 출생한 영아의 발달 차이는 현저하게 크지만, 반편성 원칙에 의해 같은 반에 편성해야 한다. 같은 만 1세반이지만 어떤 영아는 뛰어다니고 기저귀도 떼었지만, 어떤 영아는 잘 걷지 못하고 기저귀를 하고 있어서 1명의 교사가 발달차이가 다른 5명의 영아를 제대로 보육하기란 힘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명의 영아를 추가 보육하라는 것은 교사입장에서는 받아들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탄력보육의 단점으로 “교사업무 과중”(29.1%), “교사의 심리적 부담 과중”(20.6%) 등 교사 관련 항목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린이집의 영아반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비슷한 발달단계에 있는 영아를 함께 반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와 영아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에 영아반의 반편성 연령기준을 출생월별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다. 발달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출생월별로 세분화한다. 구체적으로 동년도 1월1일~6월30일 출생한 영아반, 동년도 7월1일~12월 31일 출생한 영아반으로 반편성한다. 교사대아동비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나. 보조교사 배치

1) 탄력보육 수입금 사용처 순서 변경

정부가 탄력보육을 허용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사의 '수당'이 아니라 교사의 '보조인력'이다. 본 조사에서 탄력보육 반에 보조교사 “없음”

이 2016년, 2017년 모두 더 많았다. 탄력보육이 만 1세반, 만 2세반에 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영아의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원장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으로는 “수당지급”이 59.4%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인상” “보조교사 채용” 순이었다. 그러나 교사면담에서는 추가 아동을 안 받고, 수당을 안 받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탄력보육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입장 차이가 컸다.

현재 정부는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함”(보건복지부, 2017: 63)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운영지원비의 지침을 차용해서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은 해당 반 보조교사 채용, 해당 반 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에 우선 사용함”으로 사용처의 순서를 변경해서 원장이 탄력보육의 수입금의 우선 사용은 보조교사(보조인력 채용) 채용임을 주지하도록 한다.

2) 만 3세반 보조교사 배치 및 인건비 지원

본 조사에서 현행 교사대아동비율을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사, 학부 모 면담에서 만 2세(1: 7), 만 3세반의 교사대아동비율(1: 15)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만 2세반에서 1:7로 다니다가 진급하면서 갑자기 교사대아동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급 시 1-2명의 초과인원 발생이 만 2세에서 만 3세로 진급할 때 주로 발생한다. 예컨대, 만 2세반을 3개 운영했다가(1:7, 7*3개학급=21명), 만 3세반이 2개 운영하면서(1:15, 15*2개학급=20명) 1명이 자연스럽게 초과되는 경우이다. 만 3세반의 교사대아동비율을 낮추려면 만 2세반의 비율도 연동해서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이므로 단순하지는 않다. 또, 아동수를 낮추면 보육료 감소와 연동되어 기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만 3세반의 현행 1:15는 만 2세의 비율(1:7)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치이나, 유치원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한 반에 2명의 교사(정교사, 부교사/보조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공립유치원은 1명의 정교사가 수업을 하지만, 교육실무사, 종일제 교사, 심지어 공익요원까지 성인인력이 풍부해서 수업지원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는 누리과정보조교사라고 해서 채용하고

는 있으나, 만 3세반만 전담하지 않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개 1명의 누리과정보조교사가 몇 개의 누리과정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한 반을 집중적으로 보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사대아동비율 하향화 의견이 많은 만 3세반은 현행 비율을 당장에 낮추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학부모, 교사 모두 현행 교사대아동비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다. 탄력보육 동의 요건의 현실화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탄력보육 허용 기준 중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들이 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탄력보육 해당 반 교사의 동의 등이 해당된다. 면담조사 결과, 이러한 기준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탄력보육을 원하지 않는다고 원장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장이 교사에게 탄력보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당연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든(탄력보육으로) 이웃일수도 있는 신규 입소 원아를 반대하기란 쉽지 않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어린이집 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때, 학부모들에게 교사대아동비율을 설명하고, “우리 어린이집의 반편성은 이렇게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보육을 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중간에 탄력보육 아동이 발생해도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다는 것이다(학부모 면담조사 결과). 원장은 탄력보육의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학기초에(또는 정기적으로) 학부모와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탄력보육 발생 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을 한 후 찬반 동의서를 받는다. 반대가 많이 나오면 당해 연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담임제 합리화 방안

가. 「보육사업안내」에 하나의 반편성 유형으로 명시

투담임제는 탄력보육에 비해 훨씬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편성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안내」의 반편성 기준에 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다. 현재 「보육사업안내」에 각주로 해서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보건복지부, 2017: 59)하다고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본문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있다(보건복지부, 2010: 67).

투담임제는 영아보육의 특성 상, 한 명의 교사가 보육을 하게 되면 보육실을 잠깐이라도 비울수가 없기 때문에 두 반(이상)을 합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이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이나 운영방식 등에 대해 「보육사업안내」에 상술해서 현장에서 이 제도의 장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투담임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전제로 “교사대아동비율”만을 준수해야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은 “감안하여”라고 해서 반드시 준수할 조건은 아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투담임제 운영에 따른 필요한 제반 여건이나 시설, 설비 등을 검토해서 “아동 1인당 법적 보육실 면적 준수” 내지는 “성인(교사) 2인(이상) 고려한 보육실 면적 확보” 등을 「보육사업안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담임제도 영아반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본 설문조사 결과) 합반으로 인한 영아들의 안전, 건강상(전염)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관련된 운영방침을 「보육사업안내」 함께 제시되면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해당 용어 제정

투담임제는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익숙한 용어이다. 참고로 본 설문조사에서 98.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공식명칭이 아니어서 학계에서는 복수담임제, (영유아) 합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선행연구 참조).

현재 「보육사업안내」에는 없지만, 이전의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보육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67)라고 해서 “반별최대정원제”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부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별최대정원제”는 생소한 용어이다. 뿐만 아니라 이 용어가

투담임제(표상)의 개념(표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의와 표상이 일치하는 용어를 발굴해서—예를 들어 “공동담임제” 또는 “1반 2담임제”—「보육사업안내」에 명시하고 앞의 가 항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담아서 반편성의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한다.

다.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및 보수교육에서 실시

투담임제는 교사들에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교사에게 휴식제공”도 가능하지만, “교사 간 균형있는 업무 분장의 어려움”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본 면담조사에서 원장은 투담임제가 장점이 많은 운영방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 교사는 “어떤 교사와 같은 반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혼자 여러 명의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는 교사의 견도 있었다.

본 설문조사에서 투담임제의 장점으로 주로 꼽힌 “교사에게 휴식 제공”과 “교사들 간 장점 공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투담임제를 운영해 온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하우를 수집하여, 투담임제 운영 시의 교사구성 원칙 및 수업, 행정, 학부모 면담 등의 업무 분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운영사례 등으로 구성해서 제작, 보급한다. 이 때 나 항에서 제안한 용어 제정을 같이 해서 매뉴얼 책자제목에 넣어서 새롭게 제정한 용어 홍보도 같이 한다.

보육교직원 대상의 보수교육에서도 운영매뉴얼을 활용한 투담임제 운영 지침, 사례, 노하우 등의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라. 지도·감독 강화

투담임제의 단점으로 “보육면적 협소화로 인한 아이들 안전문제”라 25.0%로 “교사들 간 업무분장 어려움”에 이어서 2순위로 나왔다. 투담임제가 아동에게도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제안한 가 항의 내용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육사업안내」에 투담임제에 대한 운영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라고 명시하여 지도·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

참고문헌

- 구수연(2015). 영아반 교사의 합반 운영 경험의 의미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14), 387-411.
-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08).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0).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7).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3).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7). 어린이집 탄력보육 반 편성 현황(시설별).
- 이정림·이미화·구자연(2013).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방안 연구-유아반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희·김현주(2017). 영아반 복수담인의 갈등수준에 따른 갈등관리방법과 직무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2), 532-539.
- 연합뉴스(2016. 3. 2).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에 학부모들 거센 반발.

부록

부록 1. 반편성 관련 원장 설문조사

부록 2. 반편성 관련 원장 면담조사

부록 3. 반편성 관련 교사 면담조사

부록 4. 반편성 관련 부모 면담조사

부록 5. 탄력보육 반 편성 현황 표

부록 1. 반편성 관련 원장 설문조사

어린이집 반편성 관련 실태 조사

- 원장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보육품질의 제고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반편성 합리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님 대상으로 반 편성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반 편성 현황 중에서 탄력보육과 투담임제(같은 연령의 2~3개 반을 하나의 반으로 합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면 조사결과를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조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주관실시기관: 닐슨컴퍼니코리아

■ 담당자: 육아지원연구팀

■ 담당자: 사회공공조사팀

이민희 연구원(02-398-7757)

손일란 연구원(02-2122-7123)

※ 귀하의 개인 연락처는 답변을 잘못 표기하거나 불분명하게 표기했을 때, 확인하기 위해 받고 있습니다.

I.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령	만 _____ 세		
2. 최종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3. 원장경력	총 _____년 _____월(원장 경력만 기재)		
4. 현 근무 기관의 설립주체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민간어린이집 ③ 가정어린이집 ④ 법인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 ⑥ 부모협동어린이집 ⑦ 기타(_____)		
5. 기관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8. 정원아수	총 _____명	9. 현원아수	총 _____명
10. 총 반수	총 _____반	10. 정교사수	총 _____명

II. 탄력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탄력보육이란 초과보육의 일환으로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 정원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어촌 특례는 제외합니다.

문 1. 귀하는 탄력보육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몰랐다 ② 알고 있다.

문 2. 귀원에서는 탄력보육을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2016년에만 실시했다. ☞ 문 3
- ② 2017년에만 실시했다(하고 있다). ☞ 문 3
- ③ 2016년, 2017년 모두 실시하고 있다. ☞ 문 3
- ④ 2016년, 2017년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문 3. 탄력보육을 실시한 경우(문 2의 ④응답자 제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2017년
탄력보육 운영 반	문 3-1-1) 만 ___세반	문 3-2-1) 만 ___세반
	만 ___세반	만 ___세반
	만 ___세반	만 ___세반
탄력보육 반의 아동 수	문 3-1-2) 총 ___명	문 3-2-2) 총 ___명
	총 ___명	총 ___명
	총 ___명	총 ___명
탄력보육 반의 교사대아동비율	문 3-1-3) 1(교사): ___	문 3-1-3) 1(교사): ___
	1(교사): ___	1(교사): ___
	1(교사): ___	1(교사): ___

*운영하지 않은 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탄력보육을 2반 이상 운영한 경우 운영반, 아동수, 보조교사 유무 모두 답합니다.

문 4. 위원에서 탄력보육을 실시하게 된 주된 이유를 다음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학부모님 요청으로(예: 형제 등 동반입소)
- ② 승급을 하면서 1~2명이 초과돼서
- ③ 정원을 채우려고
- ④ 기관 운영이 어려워서
- ⑤ 연령별 단독반 구성이 어려워서
- ⑥ 기타(_____)

문 4-1. 위원에서 탄력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방안을 다음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 ① 처우개선 미실시
- ② 인건비 인상
- ③ 처우개선 수당 지급
- ④ 보조교사 채용
- ⑤ 기타(_____)

문 4-2. 위원에서 탄력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문 4-1 ③응답자에 한해) 지급액수를 다음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문 4-2-1) 정액 지급 시	문 4-2-2) 탄력보육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 지급 시
①	5만원 이하	수익금의 10%이하
②	5만원 초과 7만원 이하	수익금의 10% 초과 20% 이하
③	7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수익금의 20% 초과 30% 이하
④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수익금의 30% 초과 40% 이하
⑤	기타()	기타()

Ⅲ. 투담임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투담임제란 대개 같은 연령반 2개(투담임제)-3개(쓰리담임제)반을 합반해서 한 개 보육실에서 보육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 5. 귀하는 투담임제를 알고 계십니까?

- ① 몰랐다 ② 알고 있다

문 6. 위원에서는 투담임제를 운영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 ① 2016년에만 실시했다. ☞ 문 3
- ② 2017년에만 실시했다(하고 있다). ☞ 문 3
- ③ 2016년, 2017년 모두 실시하고 있다. ☞ 문 3
- ④ 2016년, 2017년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문 7. 투담임제를 실시한 경우,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 7-1) 2016년	문 7-2) 2017년
투담임제 운영 반	문 7-1-1) 만 ___세반	문 3-2-1) 만 ___세반
투담임제 반의 아동 수	문 7-1-2) 총 ___명	문 3-2-2) 총 ___명
해당 반 보조교사 유무	문 7-1-3) ①있다 ②없다	문 3-2-3) ①있다 ②없다

*운영하지 않은 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투담임제를 2반 이상 운영한 경우 운영반, 아동수, 보조교사 유무 모두 답합니다.

문 8. 위원에서 투담임제를 실시하게 된 주된 이유를 다음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학부모님 요청으로
- ② 1명의 교사가 여러 명 아이를 보육하기가 힘들어서
- ③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를 같이 배정)
- ④ (하나의 반만 운영하기에) 보육실(면적)이 넓어서
- ⑤ 보육실 수가 부족해서
- ⑥ 기타(_____)

IV. 어린이집 반편성 합리화 방안을 위한 질문입니다.

문 9. 다음 중에서 탄력보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기관 운영에 실질적 도움
- ② 승급할 경우 1~2명 초과 아이들 수용 가능
- ③ 교사에게 수당 지원
- ③ 수요자 요구 반영(예: 쌍둥이 자녀 입원 시)
- ④ 특별한 장점 없음
- ⑤ 기타(_____)

문 10. 다음 중에서 탄력보육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교사의 업무 과중
- ② 아이들의 안전 문제
- ③ 교사의 심리적 부담감 과중
- ④ (조리사, 운전사, 원장 모두 업무량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만 수당 지원
- ⑤ 특별한 단점 없음
- ⑥ 기타(_____)

문 11. 다음 중에서 투담임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교사에게 잠깐의 업무, 휴식(화장실 가는 등) 시간 제공
- ② 아이들에게 폭넓은 교우 관계 제공
- ③ 교사들끼리 상호 장점을 배우고 공유 가능
- ③ 보육실의 효율적 운영
- ④ 특별한 장점 없음
- ⑤ 기타(_____)

문 12. 다음 중에서 투담임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교사 간의 균형있는 업무 분장 어려움
- ② 반 아이들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감 미흡
- ③ 보육 면적 협소화로 인한 아이들 안전 문제
- ④ 특별한 단점 없음
- ⑤ 기타(_____)

문 13. 다음 중에서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어린이집 반편성 개선방안을 순위별로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하향 조정
- ② 현행 교사대아동비율 준수하되 보조교사(인력) 배정
- ③ 탄력보육 운영 금지
- ④ 투담임제 운영 금지
- ⑤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반편성 허용(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필)
- ⑥ 기타(_____)

문 14.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반편성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반편성 관련 원장 면담조사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 원장용 질문지 —

일 시 :

장 소 :

※ 응답자(원장) 일반 특성

1. 일반 현황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_____ 세		
	최종전공	① 유아교육학 ② 보육학· 아동학 ③ 초중등교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최초 자격증 취득 시 학력					
	원장 경력	총 경력	총 _____ 년 _____ 개월 *원장경력 외 경력 제외				
현 기관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2. 현 기관명							
3. 설립유형	①국공립 ②법인 ③법인·단체 등 ④민간 ⑤가정 ⑥직장						
4. 반편성 현황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반수	총 _____ 개	총 _____ 개	총 _____ 개	총 _____ 개	총 _____ 개	총 _____ 개
	등록 재원아 수	총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교사수	반당 _____ 명	반당 _____ 명	반당 _____ 명	반당 _____ 명	반당 _____ 명	반당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총 _____ 명
반별 교사대 아동수							
5. 보조교사 유무 및 역할	① 보조교사 있음 ☞ 보조교사 역할 _____ ② 보조교사 없음						
6. 현 운영기관 운영	① 탄력보육 운영 ② 투담입제 운영 ③ ①, ② 운영하지 않음.						

주요 면담 내용

1.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 <표 1>에서 같이 탄력보육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주로 어떠한 경우에 탄력보육을 실시합니까?

<표 1>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사대아동비율 원칙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출처: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3. 현재 운영 기관의 학급에 아동수가 늘어난다면,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점(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4. 탄력보육을 허용할 경우, 시도별 기준이 다릅니다. 시도별로 운영위원회 심의, 해당 학급 보육교사의 동의, 탄력보육 반편성 보육료의 일정 비율(20%~40%) 또는 정액(영아 10만원, 유아 7만원 등) 등 보육교사에 대해 지급, 보육실 면적 준수 등을 탄력보육 허용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이외의 필요한 허용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 투담임제(독립반 두 반을 하나로 합반해서 운영하는 것)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6.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반 편성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요 면담 내용

1.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현재 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 <표 1>에서 같이 탄력보육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주로 어떠한 경우에 탄력보육을 실시합니까?

<표 1>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사대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출처: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3. 현재 담당 반의 아동수가 늘어난다면,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점(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4. 탄력보육을 허용할 경우, 시도별 기준이 다릅니다. 시도별로 운영위원회 심의, 해당 학급 보육교사의 동의, 탄력보육 반편성 보육료의 일정 비율(20%~40%) 또는 정액(영아 10만원, 유아 7만원 등)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 보육실 면적 준수 등을 탄력보육 허용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이외의 필요한 허용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 투담임제(독립반 두 반을 하나로 합반해서 운영하는 것)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6.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반 편성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반편성 관련 부모 면담조사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 부모용 질문지 —

일 시 :

장 소 :

주요 면담 내용

1.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연령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설명했나요?(표 1 참조)
1-1. <표 1>의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표 1>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사대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출처: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2.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교사 대 아동 비율
3. 만약,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반의 아동수가 늘어난다면,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점(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형제 등 동반 입소를 원하는 학부모의 경우, 초과보육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1. 아동수가 늘어난다면, 원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 반 학부모 동의, 해당 반 교사 동의, 운영위원회 심의 등)
4. 투담임제(독립반 두 반을 하나로 합반해서 운영하는 것)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습니다(장단점 소개).
4-1. 현재 자녀 반이 투담임제 입니까?
4-2. 부모님 입장에서 투담임제가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5.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반 편성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자 일반 특성

1. 자녀와의 관계 (1) 엄마 (2) 아빠 (3) 기타(적여주십시오. _____)
2. 귀하의 연령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학졸 (3)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4) 대학원 이상
4. 동거가구 구성원수(본인포함) (_____ 명)
5. 본인 및 배우자 직업 본인: _____ 배우자: _____
6. 월 평균 가구소득 월 _____만원

※어린이집 재원 자녀의 일반 특성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출생년도(연령) _____년 _____월
3. 출생순위 총 _____명 중 _____째(예: 자녀가 1명일 때, 총 1명 중 첫째)
4. 해당 자녀의 주 양육자 (1) 엄마 (2) 아빠 (3) 친조부모 (4) 외조부모 (5) 기타 친인척 (6) 비혈연 인력 (7) 기타(_____)
5. 어린이집 5-1. 기관종류(국공립, 민간 등): _____, 5-2. 이용시작 시기: _____세 부터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	유형	연령													총계			
		0세	0-1세 혼합	1세	1-2세 혼합	2세	2-3세 혼합	3세	3-4세 혼합	4세	4-5세 이상	5세	누리장에 누리장에	장애자 장애자		장애자 장애자	장애자 장애자	장애자 장애자
충청	국공립	-	-	3	-	9	-	9	1	4	1	2	-	-	-	-	-	29(6.9)
	사회복지 법인	-	-	11	2	18	-	12	-	6	3	1	1	-	-	-	-	54(12.8)
	법인·단체 등	-	-	2	-	-	-	-	-	-	1	-	1	-	-	-	-	4(95)
	직장	-	-	1	-	1	-	-	-	-	-	-	-	-	-	-	-	3(7)
합동	-	-	1	1	-	-	-	-	-	-	-	-	-	-	-	-	1(2)	
충남	가정	-	-	45	32	31	-	-	-	-	-	-	-	-	-	-	-	108(10.4)
	민간	-	-	210	46	274	-	96	16	29	34	27	-	-	-	-	-	732(70.5)
	국공립	-	-	15	1	19	-	5	-	2	-	3	-	-	-	-	-	45(4.3)
	사회복지 법인	-	-	29	3	39	-	21	3	8	8	10	-	-	-	-	-	121(11.7)
합동	-	-	5	3	7	-	4	-	1	3	2	-	-	-	-	-	25(2.4)	
충북	가정	-	-	4	1	2	-	-	-	-	-	1	-	-	-	-	-	8(7)
	민간	-	-	116	51	76	-	-	-	-	-	-	-	-	-	-	-	244(28.7)
	국공립	-	-	146	36	208	-	70	10	27	18	18	-	-	-	-	-	537(63.1)
	사회복지 법인	-	-	2	2	14	-	5	-	1	1	1	-	-	-	-	-	26(3.1)
합동	-	-	10	1	7	-	2	-	1	-	2	-	-	-	-	-	23(2.7)	
대전	가정	-	-	1	3	8	-	1	1	-	-	-	-	-	-	-	-	14(1.7)
	민간	-	-	3	-	2	-	-	-	-	-	1	-	-	-	-	-	6(7)
	국공립	-	-	67	46	85	-	-	-	-	-	-	-	-	-	-	-	200(20.6)
	사회복지 법인	-	-	160	64	268	-	51	25	10	15	10	-	-	-	-	-	616(63.5)
합동	-	-	8	-	6	-	7	1	2	1	-	-	-	-	-	-	25(2.6)	
세종	가정	-	-	15	-	27	-	15	-	5	6	5	-	-	-	-	-	75(7.7)
	민간	-	-	4	-	5	-	3	1	1	1	-	-	-	-	-	-	15(1.5)
	국공립	-	-	9	-	16	-	7	-	1	1	-	-	-	-	-	-	33(3.4)
	사회복지 법인	-	-	2	-	1	-	-	2	-	-	-	-	-	-	-	-	6(6)
합동	-	-	9	2	6	-	-	-	-	-	-	-	-	-	-	-	17(18.3)	
대구	가정	-	-	24	4	40	-	3	-	-	-	3	-	-	-	-	-	74(79.6)
	민간	-	-	-	-	-	-	-	-	-	-	-	-	-	-	-	-	-
	국공립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 법인	-	-	-	-	-	-	-	-	-	-	-	-	-	-	-	-	-
합동	-	-	1	-	1	-	-	-	-	-	-	-	-	-	-	-	2(2.2)	
대구	가정	-	-	20	15	23	-	-	-	-	-	-	-	-	-	-	-	58(6.9)
	민간	-	-	300	46	281	-	30	9	3	-	3	-	-	-	-	-	676(81.5)

지역	유형	연령											총계				
		0세	0-1세 혼합	1세	1-2세 혼합	2세	2-3세 혼합	3세	3-4세 혼합	4세	4-5세 이상	5세		누리장에 누리장에	장애가 중인	장애가 양호한	방과후 반
전남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	41	6	94	2	22	5	5	14	9	5	1	2	-	206(17.6)
	직장 협동	-	-	10	1	15	2	6	3	1	1	1	1	-	-	-	40(3.4)
	가정	-	-	11	-	9	-	2	-	-	-	-	-	-	-	-	22(1.9)
	민간	-	-	3	-	4	-	-	-	-	-	-	-	-	-	-	7(.6)
전북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	30	37	30	1	-	-	-	-	-	-	-	-	-	118(12.0)
	직장 협동	-	-	158	37	248	1	64	20	21	44	26	1	-	-	-	620(63.3)
	가정	-	-	26	2	33	-	12	-	1	4	2	2	3	-	-	83(8.5)
	민간	-	-	24	6	42	-	20	6	3	7	11	11	2	-	-	132(13.5)
전북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	4	1	9	-	4	1	3	-	-	-	-	-	-	22(2.2)
	직장 협동	-	-	4	-	1	-	-	-	-	-	-	-	-	-	-	5(.5)
	가정	-	-	58	50	31	-	-	-	-	-	-	-	-	-	-	138(18.0)
	민간	-	-	167	35	197	-	28	10	13	21	10	-	-	1	-	482(62.4)
전북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	10	-	4	-	3	2	1	1	3	-	-	-	-	24(3.1)
	직장 협동	-	-	17	3	26	-	13	2	3	4	6	2	2	1	-	79(10.2)
	가정	-	-	11	5	12	-	6	2	2	3	1	-	-	-	-	42(5.4)
	민간	-	-	2	1	3	-	-	1	-	-	-	-	-	-	-	7(.9)
제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	18	21	8	-	-	-	-	-	-	-	-	-	-	47(7.4)
	직장 협동	-	-	145	13	155	5	68	15	22	12	6	-	-	-	-	441(69.8)
	가정	-	-	6	-	6	-	6	-	1	1	-	-	-	-	-	20(3.2)
	민간	-	-	21	3	28	-	17	4	9	2	7	-	-	-	-	91(14.4)
총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	5	-	7	-	4	-	1	2	-	-	-	-	-	19(3.0)
	직장 협동	-	-	7	-	6	-	1	-	-	-	-	-	-	-	-	14(2.2)
	가정	-	-	6,299(30.1)	1,981(9.4)	8,690(41.5)	133(.64)	1,682(8.04)	424(2.03)	517(2.5)	576(2.7)	504(2.4)	67(.3)	32(.1)	12(.09)	-	20,918(100.0)
	민간	-	-	-	-	-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7. 7). 어린이집 반 편성 현황(시설별).

연구보고 2017-03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소장직무대행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2271-258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16-9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ChildCare and Institute of
Education



9 791187 952169

ISBN 979-11-87952-16-9